

특정감사

감사 보고서

-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 I -

2017. 8.

감사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중점 및 대상	1
3. 감사실시 과정	2
4. 감사결과 처리	2
II. 감사대상기관 업무 현황 및 실태	4
III.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7
1. 감사결과 총괄	7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8
(1)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소득조사 부적정	9
(2)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재산조사 부적정	14
(3)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누락	23
(4) 복지재정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환수	29
(5)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41
(6)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유예관리 부적정	49
(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연계 등 시스템 운영 부적정	56
(8) 소득기준을 초과한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 미증지	64

(9) 주거급여(임차료)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67
(10)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부적정.....	71
(11) 행복e음 실습용 교육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부적정.....	77
(12) 보육교사 임면사항 등 관리·감독 부적정.....	81
(13)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선정업무 처리 부적정.....	92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재정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2016년도 사회복지·보건분야 총지출은 123.4조 원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386.4조 원)의 31.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분야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및 재정누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 기존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해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포괄급여 방식’에서, 2015년 7월부터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4개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여 복지수요자의 욕구를 반영·지원하게 되었다.

이에, 복지분야에 대한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재정통제 및 감시기능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의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등 새로 도입된 복지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저소득층 복지분야에 대해, ① 시·군·구 등 보장기관의

공적자료 반영 등 수급자격 결정의 적정성 ②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통제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 ③ 복지사각 해소시책의 미비사항 등을 감사중점으로 점검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 교육부의 교육급여 사업 등을 감사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2017. 2. 20.부터 같은 해 3. 6.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2017. 3. 8.부터 같은 해 4. 18.까지(3. 22.부터 4. 4.까지는 제외) 20일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주거급여), 교육부(교육급여)를 대상으로 12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실시를 위해 시·군·구 등 보장기관의 수급자 관리에 대한 현장 점검과 병행하여 전국적인 실태 분석 및 이를 통한 문제점 도출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한 대규모 전산자료 추출·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검토 중인 주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2017. 4. 18. 보건복지부 차관 및 국토교통부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여 의견교환을 하였고, 감사원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통해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 대상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2017. 8. 25.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업무현황 및 실태

1. 복지사업 개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주거급여) 및 교육부(교육급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지사업 현황은 [표 1]과 같이 2016년도 예산기준 28개 세부사업에 9조 5,254억 원 규모이다.

[표 1] 저소득층 대상 복지사업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세부사업 수	예산	세부사업 수	예산
계	35	97,176	28	95,254
보건복지부	33	84,929	26	93,804
국토교통부(주거급여)	1	11,230	1	10,289
교육부(교육급여)	1	1,017	1	1,450

자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2.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체계

보건복지부는 기존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던 ‘서울행정시스템’을 보완하여 2010년 1월부터 업무처리 체계를 전산화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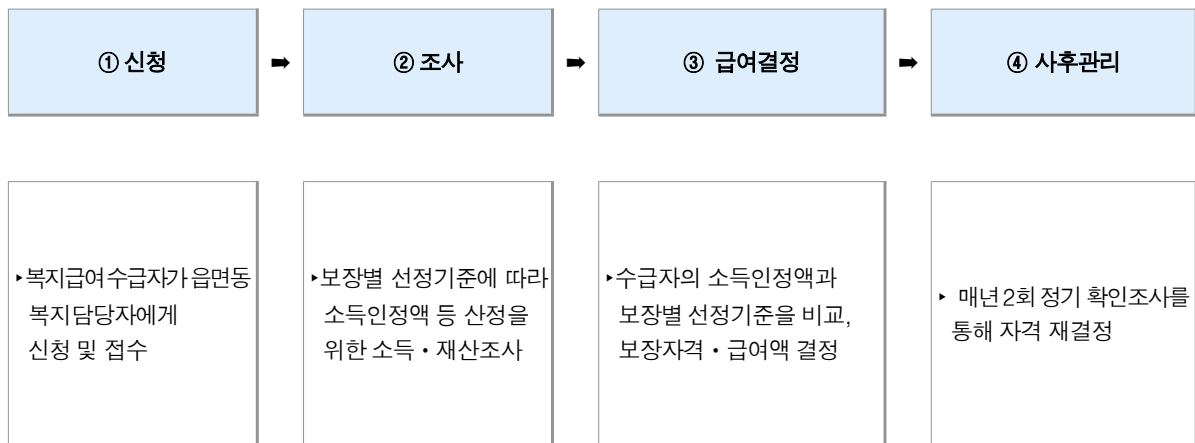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종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보장자격 및 급여액 결정 등을 전산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위 시스템을 통해 71종의 소득·재산 등 공적정보¹⁾를 24개 기관으로부터 수집

1) ■ 소득정보: 보수월액(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급여(국민연금공단), 종합소득세(국세청) 등
 ■ 재산정보: 재산세취득세(행정자치부), 금융정보(금융기관), 차량소유정보(국토교통부) 등
 ■ 인적정보: 주민세대원정보(행자부),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등

하여, 수급자에 대한 보장자격 및 급여액 등을 결정하는 시·군·구 등 보장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공적 정보를 토대로, 시·군·구 등 보장기관은 [그림]과 같이 수급자격 신청, 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급여결정 및 사후관리 등 업무 전반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림] 복지사업 업무처리 흐름도



3. 저소득층 복지사업 현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라, 저소득층에게는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解産)·장제(葬祭)·자활급여 계 7종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²⁾의 각각 29%,

2)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

40%, 43%, 50%인 경우에 수급자가 보장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해산·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각각 출산·사망한 경우에 지원하고 있다.

급여종류별 지원내용은 [표 2]와 같이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비용과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용을, 교육급여는 수업료·입학금·교과서대를, 해산·장제급여는 사유별 일정금액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표 2] 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별 지원내용 및 예산규모(2016년)

(단위: 억 원)

구분	지원내용	2016년 예산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 (예: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는 673,520원 지원)	36,267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지원	48,192
주거급여	▪임차가구에는 실제 전월세비용 (월임차료 +보증금 환산액)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종합적 수리 지원	10,289
교육급여	▪고등학생 수업료·입학금 전액, 교과서대 131.3천 원 (단, 초중생은 부교재비 39.2천 원/인), 중고생 학용품비 53.3천 원/인)	1,450
해산·장제급여	▪출산(여성)한 수급자에게 600천원 ▪수급자 사망시 750천원	220

자료: 2016년 주요업무 참고자료(보건복지부)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1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이를 처분요구 종류별로 구분하면 [표3]과 같다.

[표3]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계	주의	통보	
		일반	시정완료
14	2	11	1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① 보건복지부는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와 달리 실직 등으로 근로상태가 변경되었다고 수급자가 주장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보장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번 감사 시 2016년 하반기 정기확인조사 시 상시 근로소득 공적정보 등을 점검한 결과, 22,810명의 급여중지 해당자 및 1,127명의 급여감액 해당자 등 23,937명에게 143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 ②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금융재산·자동차 등 공적정보 조회금액을 미반영하거나 직권으로 금융기관대출을 등록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이번 감사 시 점검한 결과 금융재산 미반영에 따라 7,161명에게 59억 원, 직권 금융기관 대출 반영에 따라 5,543명에게 140억 원, 자동차를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아 7,478명에게 278억여 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 ③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잘못 설계·운영,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조회하지 않은 채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있어, 이번 감사 시 점검한 결과, 2017년 상반기 정기확인조사 시에만 5,329명에게 159억여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 ④ 보건복지부는 시·도가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45억 원을 미반납하고 있는데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의 반납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의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회수 방안을 미강구
- ⑤ 보건복지부는 2014. 12. 3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단전·단수 등의 정보를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활동은 하고 있으나, 이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보관 중인 수급권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수급자를 발굴하는 방안은 미강구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등에 공적자료 반영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14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별첨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소득조사 부적정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2회(상·하반기) 13개 사회보장급여의 확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소득·재산 등에 대한 공적정보를 확보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 등 보장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지침」에 따르면 수급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해, 상시근로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의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고용보험 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 등(이하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라 한다)을 순서대로 반영하되, 수급자의 실직 등으로 근로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소득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매년 상·하반기 확인조사를 위해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를 각 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시·군·구 등 보장기관에 제공하고 있는데, 시·군·구는 확인조사기간 동안 수급자의 이의제기 소명을 받아 실직 등으로 근로상태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표 1]과 같이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의 기준시점과 수급자의 이의제기 소명시점이 2개월 또는 3개월여간 차이가 나게 되어, 시·군·구 등 보장기관은 이의제기 소명기간 동안 수급자들이 실직 등으로 근로상태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게 될 경우 제공된 공적정보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표 1] 정기 확인조사 시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의 기준시점과 이의제기 소명기간

구분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의 기준시점	이의제기 소명기간
'15년 하반기	'15년 7월	'15년 10~12월
'16년 상반기	'15년 12월	'16년 3~5월
'16년 하반기	'16년 7월	'16년 10~12월
'17년 상반기	'17년 2월	'17년 4~6월

자료: 보건복지부

따라서 제공된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와 달리 실직 등으로 근로상태가 변경되었다고 수급자가 주장할 때는 이의제기 소명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를 수집하여 보장기관에 추가로 제공하는 등 수급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시·군·구 등 보장기관은 [표 2]와 같이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4차례의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누적합계 6,171,994명에 대해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를 제공받고도, 수급자로부터 이의제기 소명을 받아 711,882명은 소득을 0원으로, 43,335명은 소득을 축소하는 등 755,217명에 대해서 상시근로소득 공적 정보와 달리 소득을 0원 또는 축소하여 반영한 채 보장자격을 결정하였다.

[표 2] 매년 상·하반기 확인조사 시 상시근로소득 소명자 현황

(단위: 명)

구분(시기)	상시근로소득 공적 정보로 확인된 소득자	상시근로소득 소명내용 반영 현황		
		소계 ^{주)}	소득0원 (실직)	소득축소
계	6,171,994	755,217(12.2%)	711,882	43,335
'15년 하반기	1,375,377	295,991(21.5%)	279,012	16,979
'16년 상반기	1,742,285	187,548(10.8%)	174,947	12,601
'16년 하반기	1,654,691	130,016(7.9%)	124,854	5,162
'17년 상반기	1,399,641	141,662(10.1%)	133,069	8,593

주: ()안의 %는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로 확인된 소득자 중 수급자 소명자 반영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8. ~ 4. 18.) 중, 2016년 하반기 확인조사 시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2016년 8월 기준)와 달리 상시근로소득을 0원으로 반영하였던 124,854명의 수급자만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의제기 소명기간 동안의 상시근로 소득 공적정보(산재·고용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소명 종료 시점인 2016년 12월 말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이 26,761명으로서 근로소득이 0원으로 반영되었던 21.4%가 사실과 다르게 소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위 26,761명에 대해 2016년 하반기 확인조사 시 이의제기 소명기간 동안(2016년 10~12월)의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를 적용하여 수급자의 보장자격 및 급여액을 다시 판정한 결과, [표 3]과 같이 22,810명의 급여중지 해당자 및 1,127명의 급여감액 해당자 등 23,937명에게 143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2016년 하반기 확인조사시 소득을 0원으로 거짓소명한 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현황

(단위: 명, 원)

합계		공적정보 반영 시 급여중지가 필요한 수급자		공적정보 반영 시 급여감액이 필요한 수급자	
인원	소명기간 동안 부정수급액	인원	소명기간 동안 부정수급액	인원	소명기간 동안 부정수급액
23,937	14,370,031,204	22,810	13,486,457,348	1,127	883,573,856

자료: 보건복지부

【 관련 사례 】

- 한부모가족 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 A에 대해서는 '16년 하반기 정기확인조사시 소득이 5,941,741원이었으나 0원으로 소명을 받아 이를 인정하였으나, 이를 검증한 결과 허위로 확인되는 등 수급자격 부당유지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B에 대해서는 '16년 하반기 정기확인조사시 소득이 3,750,000원이었으나 0원으로 소명을 받아 이를 인정하였으나, 이를 검증한 결과 허위로 확인되는 등 수급자격 부당유지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와 달리 실직 등의 사유로 상시근로소득이 없다고 주장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소명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를 보장기관에 추가로 제공하거나 사후적으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 ① 2016년 하반기 확인조사 시 실직 등 사유로 상시근로소득이 없다고 소명하였지만 이의제기 소명기간 동안의 상시근로가 확인된 수급자(23,937명)에 대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사실조사를 거쳐 보장자격 중지 및 부정급여액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고
- ② 2016년 하반기 이외의 나머지 확인조사에 대해서도 상시근로소득이 없다고 주장한 수급자의 소명이 적절한지 여부를 점검하여 보장기관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며
- ③ 앞으로 상시근로소득이 없다고 수급자가 주장할 때는 이의제기 소명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를 보장기관에 추가로 제공하는 등으로 수급자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재산조사 부적정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시스템을 통하여 수급자·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³⁾ 산정을 통한 보장자격 결정 등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지침」에 따르면 수급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는 소득평가액과 금융재산(대출)·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⁴⁾을 합산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표 1]과 같이 금융재산(대출)·자동차에 대해서 각각 금융기관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산반영에 필요한 공적정보를 수집하여,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하여 시·군·구 등 보장기관에 제공하는데, 시·군·구는 재산반영을

3)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4)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위해 공적정보를 원칙적으로 반영하나, 수급자가 합리적인 이의제기 소명을 하면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 공적정보와 달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1] 금융재산·자동차에 대한 공적정보 보유기관 및 요구범위

구분	공적정보 보유기관	요구범위
금융재산	은행, 보험사, 증권회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자동차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적정보

자료: 보건복지부

2.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유 금융재산의 미반영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 지침」에 따르면 공적자료로 조회된 금융재산(예금·보험 등)은 원칙적으로 수급자·부양의무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하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명·도명계좌로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 처분결과 등이 확인될 때는 공적자료로 조회된 금융재산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행복e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때는 차명·도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이외에는 수급자·부양의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조회된 금융재산을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임의로 수정하거나 축소·반영하지 못하도록 기능을 구현하는 한편, 사후적으로 시·군·구가 임의로 금융재산을 반영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검증기능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보건복지부는 행복e음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금융기관에 조회된 금융재산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차명·도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이외에도 “담당자 파악” “매각” “기타” 등 사유를 선택하여 금융기관에 조회된 금융재산 정보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기능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금융기관에 조회된 금융재산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8. ~ 4. 18.) 중 차명·도명계좌 등 이외의 사유로 금융재산을 축소·미반영⁵⁾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2017년 3월 현재 수급자 22,481명, 부양의무자 2,831명 등 25,312명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된 금융재산이 4,784억 원이었으나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담당자 파악” “매각” “기타” 등의 사유를 들어 379억 원의 금융재산(3,042명)만 반영한 채 수급자격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공적 금융정보와 달리 처리한 현황

(단위: 건, 원)

구분	금융정보와 달리 반영한 건수			당초 금융조회 금액	금융정보 반영금액	금융정보 조회금액보다 적게 반영한 금액
	소계	미보유 (0원)로 반영	금액을 축소반영			
계	25,312	22,270	3,042	478,495,461,344	37,904,712,151	440,590,749,193
수급자	22,481	19,844	2,637	375,422,800,948	26,361,296,900	349,061,504,048
부양의무자	2,831	2,426	405	103,072,660,396	11,543,415,251	91,529,245,145

자료: 보건복지부

5) 중증재산으로 분류되어 수급자·부양의무자 명의의 금융재산으로 미반영된 경우 제외

그리고 위 25,312명의 수급자 등⁶⁾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조회되었던 금융재산 금액을 재반영하여 보장자격 및 급여액을 재판정한 결과, [표 3]과 같이 금융재산을 정당하게 반영할 경우 5,074명이 급여중지 해당자였고 2,087명이 급여감액 해당자였으며, 공적 금융정보를 반영하지 않은 이후 2017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급여중지 해당자 및 급여감액 해당자 등 7,161명에게 59억여 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공적 금융정보 반영 시 급여중지·감액 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현황

(단위: 명, 원)

합계		공적정보 반영시 급여중지가 필요한 수급자		공적정보 반영시 급여감액이 필요한 수급자	
인원	소명기간 동안 부정수급액	인원	소명기간 동안 부정수급액	인원	소명기간 동안 부정수급액
7,161	5,978,083,458	5,074	5,004,350,699	2,087	973,732,759

자료: 보건복지부

【 관련 사례 】

- 차상위장애인 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 C은 증권 1,014,650,000 원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급자격 부당유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D은 563,093,000원의 요구불예금을 반영하지 않은채 수급자격 부당유지

3. 금융기관에 조회되지 않은 대출금의 직권등록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보건복지부는 매주 1회씩 신규 신청한 수급자·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금융기관에 요청·수집하고, 매년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시에는 전체 수급자·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에 금융정보를 요청·수집하여, 행복e음시스템을 통하여 시·군·구 등 보장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6) 부양의무자의 경우 부양판정소득액에 따라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및 부양비 산정 여부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수급자의 보장자격 결정

따라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해서는 필요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조회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조회된 금융기관 대출금 이외에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별도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과다 또는 중복 등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보건복지부는 행복e음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공적정보⁷⁾로 파악이 곤란한 소득을 반영한다는 사유로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수급자의 소득을 조사·등록하는 “직권등록” 기능을 구축하면서, “직권등록” 기능이 불필요한 금융기관 대출금에도 해당기능을 적용하였다.

더욱이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증빙 없이도 금융기관 대출금을 직권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의 유효기간을 임의로 설정(예, 9999년)하여 해당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급자의 부채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8. ~ 4. 18.) 중, 직권등록된 금융기관 대출금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4]와 같이 2017년 3월말 현재 수급자 28,229명, 부양의무자 5,177명 등 33,406명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된 금융대출금 총 2조 4,904억 원을 부채로 반영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액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의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고용보험 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 등

[표 4] 직권등록 금융기관 대출금 현황(2017년 3월 말 기준)

(단위: 건, 원)

구분	직권등록 건수	직권등록 대출금액
전체	33,406	2,490,484,729,767
수급자	28,229	1,571,540,803,061
부양의무자	5,177	918,943,926,706

자료: 보건복지부

그리고 위 수급자 등 33,406명⁸⁾에 대해서 직권으로 등록된 금융부채를 제외한 상태에서 보장자격 및 급여액을 재판정한 결과, [표 5]와 같이 2017년 3월 감사일 현재 4,028명이 급여중지 해당자였고, 1,515명이 급여감액 해당자였으며, 금융대출이 직권등록된 이후 2017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급여중지 해당자 및 급여감액 해당자 등 5,543명에게 140억여 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직권 등록 금융부채 제외 시 급여중지·감액 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현황

(단위: 명, 원)

합계		직권등록 금융부채 제외 시 급여중지가 필요한 수급자		직권등록 금융부채 제외 시 급여감액이 필요한 수급자	
인원	부채등록기간 부정수급액	인원	부채등록기간 부정수급액	인원	부채등록기간 부정수급액
5,543	14,023,810,048	4,028	12,295,747,411	1,515	1,728,062,637

자료: 보건복지부

【 관련 사례 】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E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조회되지 않은 대출금 164,844,648원을 직권으로 부채로 등록하여 수급자격 부당유지

8) 부양의무자의 경우 부양판정소득액에 따라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및 부양비 산정 여부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수급자의 보장자격 결정

4. 수급자 소유 자동차의 재산 미반영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지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등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공적 정보를 반영하되, 예외적으로 분실·도난(자동차등록 말소증을 확인)되었거나, 본인의 자동차가 아니라 명의도용(판결문 확인)된 경우 등에는 이를 인정⁹⁾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행복e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조회된 차량소유정보와 달리 수급자의 이의제기 소명을 받아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차량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자동차등록증 말소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제기 소명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보건복지부는 행복e음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공적정보로 조회된 수급자의 자동차에 대해서 멸실·자진말소 등의 사유로 수급자가 이의제기 소명을 하여 차량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자동차등록증 말소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검증기능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8. ~ 4. 18.) 중, 국토교통부를 통해 조회된 수급자 명의의 차량소유정보와 달리 차량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 9,758대의 자동차¹⁰⁾에 대해, 2017년 3월 감사일 현재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소유정보를 재조회한 결과, 이 중 4,245대는 자동차등록증이 말소되지 않은 채 수급자 명의의 차량으로 여전히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 이외에, 제3자 명의로서 법인등기하지 않은 단체의 차량, 명의도용차량 등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10) 지침상 타인명의 자동차로 인정할 수 있는 미등기법인(예, 교회소유) 및 불법명의 자동차는 제외하고 분석

- 명의도용 등의 경우에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법인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의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그리고 위 4,245대의 자동차의 소유현황을 반영하여 보장자격 및 급여액 등을 재판정한 결과, [표 6]과 같이 2017년 3월 현재 6,712명이 급여중지 해당자였고, 766명은 급여감액 해당자였고, 자동차를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은 기간 동안 급여중지 해당자 및 급여감액 해당자 등 7,478명에게 278억여 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말소되지 않은 자동차 반영시 급여중지 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현황

(단위: 명, 원)

합계		말소되지 않은 자동차 반영 시 급여중지가 필요한 수급자		말소되지 않은 자동차 반영 시 급여감액이 필요한 수급자	
인원	자동차 미반영 기간 부정수급액	인원	자동차 미반영 기간 부정수급액	인원	자동차 미반영 기간 부정수급액
7,478	27,818,054,624	6,712	25,487,958,314	766	2,330,096,310

자료: 보건복지부

【 관련 사례 】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F의 경우 본인 소유의 162,129,576원 상당의 자동차가 말소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수급자격 부당유지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금융기관에 조회된 금융재산을 원칙적으로 반영하고, 금융기관에 조회된 금액 이외에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대출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등록증이 말소되지 않은 자동차가 반영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기능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 ① 금융재산, 금융기관 대출금 및 자동차 소유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반영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급자(20,182명)에 대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사실조사를 거쳐 보장자격 중지 및 급여액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고
- ②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금융재산, 금융기관 대출금 및 자동차 소유현황에 대해 규정을 위반하여 공적정보와 달리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 ③ 사후적으로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금융재산, 금융기관 대출금 및 자동차에 대해서 공적정보와 달리 수급자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누락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2회(상·하반기) 13개 사회보장급여¹¹⁾의 확인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표 1]과 같이 금융정보 요청근거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9개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자·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¹²⁾를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시·군·구 등 보장기관에 제공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¹³⁾ 산정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11) ① 기초생활보장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차상위 장애수당 ⑤ 차상위자활 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⑦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⑧ 한부모가족지원 ⑨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⑩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⑪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의료급여 ⑫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⑬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등 13개 복지사업

12) 요구불예금(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저축성예금(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수익증권·출자금·출자지분·부동산(연금)신탁(최종시세가액), 채권·어음·수표·채무증서·신주인수권증서·양도성예금증서(액면 가액), 연금저축(정기 지급금액 또는 최종 잔액)

13)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표 1] 금융정보 조회 법적근거 및 범위

보장	금융정보 조회의 법적근거	금융정보 조회 대상 범위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3항, 제23조의2	· 수급자 ·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 수급자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 제12조 제1항	·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1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 수급자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 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3항, 제23조의2	·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3조의3	· 수급자

자료: 보건복지부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사회보장급여법 제8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에 따르면 보장기관(시·군·구)의 장은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반드시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3항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수급자는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면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나, 부양의무자는 가족해체 등의 사유로 조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와 달리 수급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득·재산 조사를 하고,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시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빠짐없이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시·군·구 등 보장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복e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때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금융조사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기능을 구현하고, 행복e음시스템에 등재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임의로 삭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보건복지부는 2010년 1월 행복e음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위 9개 보장의 수급자에 대해서 시·군·구가 “금융조사 대상자 아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여러 보장의 수급자·부양의무자로 동시에 등록된 개인의 경우 하나의 보장에서라도 “금융조사 대상자 아님”으로 지정되면 행복e음시스템에 등재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일괄 삭제되도록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매년 상·하반기 확인조사 시 “금융조사 대상자 아님”으로 지정된 수급자와 “금융조사 대상자”로 지정되었는데도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삭제된 수급자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금융정보 조회를 요청하지 않고 있었고, 2017년 3월 감사 시까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8. ~ 4. 18.) 중 정기 확인조사 시 금융정보 조회를 요청하지 않은 수급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2017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시 “금융조사 대상자 아님”으로 지정된 사람이 169,707명, “금융조사 대상자”이지만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삭제된 사람이 16,892명 등 186,599명의

수급자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금융정보 조회를 요청하지 않는 등 매년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시 동일한 사유로 “금융조사 대상자 아님”으로 잘못 입력된 수급자 등 평균 202,666명에 대해 금융기관에 금융정보 조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매년 상·하반기 확인조사시 금융조사 누락자 현황('15년~'17년)

(단위: 명)

구분	합계	금융조사 누락사유	
		“금융조사 대상 아님”으로 잘못 지정된 자	“금융조사대상자”이나 동의서가 잘못 삭제된 자
평균(합계)	202,666 (1,013,331)	181,557 (907,788)	21,108 (105,543)
'15년 상반기	115,479	103,450	12,029
'15년 하반기	261,259	247,915	13,344
'16년 상반기	209,248	198,252	10,996
'16년 하반기	240,746	188,464	52,282
'17년 상반기	186,599	169,707	16,892

자료: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8. ~ 4. 18.) 중 금융정보 조회 누락 대상자가 많아(1,013,331명), 2017년 상반기 확인조사 시 금융정보가 누락된 186,599명만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금융정보를 조회한 후 수급자격 유지 여부와 부정수급액을 산정한 결과, [표 3]과 같이 2017년 3월 현재 2,808명이 급여중지 해당자였고, 2,521명이 급여감액 해당자였으며, 금융정보를 조회하지 않았던 기간동안 위 급여중지 해당자 및 급여감액 해당자 등 5,329명에게 159억여 원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금융정보 반영시 급여중지·감액 필요한 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단위: 명, 원)

합계		금융정보 반영 시 급여중지가 필요한 수급자		금융정보 반영 시 급여감액이 필요한 수급자	
인원	금융정보 미반영 기간 부정수급액	인원	금융정보 미반영 기간 부정수급액	인원	금융정보 미반영 기간 부정수급액
5,329	15,965,003,820	2,808	14,009,621,387	2,521	1,955,382,433

자료: 보건복지부

【 관련 사례 】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G은 이번 감사시 확인한 결과, 증권 706,682,000원, 요구불예금 15,049,000 등 금융재산 722,3610,000원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간 금융정보를 조회하지 않아 수급 자격 부당유지
- 차상위장애인보장 수급자 H는 이번 감사시 확인한 결과, 요구불예금 51,294,000원, 저축성예금 50,909,000원, 증권 73,727,000원, 보험 268,164,000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간 금융정보를 조회하지 않아 수급자격을 부당하게 유지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금융조사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할 수 있는 기능을 폐지하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임의로 삭제되지 않게 행복e음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수급자의 금융 정보가 누락된 채 보장자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① 금융재산 조회를 하지 않은 채 사회보장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급자(5,329명)에 대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사실조사를 거쳐 보장자격 중지 및 부정수급액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②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금융조사 제외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자동 삭제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등으로 수급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빠짐없이 조회하여 보장자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복지재정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환수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등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준보조율¹⁴⁾에 따라 시·도를 통해 시·군·구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 해당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시·군·구의 집행잔액을 반환받아 보건복지부에 반납¹⁵⁾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보조금을 확정된 후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14) 국가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수익사 부담액 등 전체 사업비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15) 시·도는 기준보조율에 따른 국가 부담분(국고보조금)에 지방비 부담분(시·도 보조금)을 더하여 각 시·군·구에 교부하고 시·군·구는 지방비 부담분(시·군·구비)을 추가하여 사업을 실시한 후 회계연료 종료 시 시·군·구는 국가부담분과 지방비 부담분(시·도 부담분)을 시·도에 반납하고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반납받은 국고보조금을 보건복지부에 반납

그리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¹⁶⁾ “II-12. 자치단체보조사업의 (7)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 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사업집행을 완료한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을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 1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의 “802 반환금 기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가 고지한 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 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 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고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반환받은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하였다가 중앙 관서에 반납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시·도에 시·군·구로부터 집행잔액의 일부만 반납받아 보관중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예산에 지연 반영하는 등으로 제때 반납하지 않거나, 시·도 세입세출외 현금에 반환된 시·군·구의 집행잔액을 분할 납부하는 조치 없이 그대로 보관하는 등 적기에 반납

16)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제80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이 지침에는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서 교부하는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의 반납 실적이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¹⁷⁾ 등의 평가지표로 선정되도록 하여 재정인센티브 제공 및 평가결과 공개 등 실효성 있는 회수 방안을 마련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18.~4. 18.) 중 연도별, 시·도별로 미반납된 집행잔액(이자 포함)이 1억 원 이상인 일반회계 24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 국민건강증진기금 6개 사업, 총 31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국고보조금 미반납 집행잔액(2017. 2. 22. 기준) 계 64,520백만여 원의 반납실태를 점검하였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¹⁸⁾는 2015년 장애인연금사업의 국고보조금 미반납금액 11,161백만여 원(2017. 2. 22. 기준) 중 3,902백만여 원만을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반납¹⁹⁾하고, 나머지 7,258백만여 원은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시비 부담분(48억 원) 등 다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등 [별표 1] “사업별 국고보조금 미반납 금액 현황”과 같이 7개 시·도의 33개 시·군·구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반납하여야 하는 28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계 25,063백만여 원을 사업종료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반납²⁰⁾하지 않았고, 그중 9,478백만여 원은 2017년 본예산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1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2016년 경우 사회복지, 일반행정 등 9개 분야(27개 시책의 196개 세부지표)에 대해 2016년 1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연구기관, 학계 등 전문가 131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2016. 7월에 평가결과를 언론 등에 발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포함

19) 서울특별시는 감사기간중인 2017. 3. 10. 2,148백만여 원 반납(성동구의 경우 2017. 2. 27. 13백만여 원 반환)하고, 나머지 1,741백만여 원은 납부 예정

20) 2017. 2. 22. 이후 감사기간 중 반납을 완료하였거나 반납을 준비중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5,585백만여 원

이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2015. 10. 12. 송파구로부터 2012년도 자활사업의 집행잔액 231백만여 원을 반납받고도 이를 즉시 보건복지부에 반환하지 않고 약 1년 6개월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감사기간 중인 2017. 4. 5. 반납하는 등 [별표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반환금 보유 현황”과 같이 9개 시·도가 시·군·구로부터 반환받은 27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39,457백만여 원 (2017. 2. 22. 기준)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을 기한 내 미반납하거나 지연 반납하는 등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반납 유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실효성 있는 집행잔액 반납 유인책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예산에 제때 반영하여 납부하지 않거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행잔액을 기한 내에 반납받더라도 보건복지부에 조기에 반납하지 않고 있어 국가는 잔액을 차년도 복지사업에 투입·운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률이나 전체 미수금 대비 지방자치단체별 비중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으로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시·도별 반납률 현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정보’란에 공개하는 한편, 분할 납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촉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때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울특별시 등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터 [별표 1]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금액 현황의 25,063백만여 원과 [별표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반환금 보유 현황의 39,457백만여 원 등 미반납 금액 계 64,520백만여 원을 조속히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는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기한 내 회수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사업별 국고보조금 미반납 금액 현황

(단위: 원)

연번	사업명	사업 연도	집행잔액 (2017. 2. 22.기준)	미반납 금액	시·도명	미반납 현황 (*2017. 2. 22.기준)		
						시도	금액 (2017본예산미반영금액)	2017년 본예산 반영 여부
	합계		28개 사업	25,063,145,480			25,063,145,480 (9,478,946,920)	
1	장애인 연금	2015	11,442,287,930	11,161,158,68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3,889,513,270	O
						성동구	13,464,980	O
						서울특별시	7,258,180,430	X
2	장애인 활동 지원	2012	709,770,290	308,419,37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5,169,690	O
						관악구	9,074,370	X
						용산구	24,900	O
						노원구	8,499,600	O
						송파구	285,650,810	O
		2013	2,433,654,980	12,033,020	서울특별시	용산구	5,753,610	O
						동대문구	6,279,410	X
		2014	1,849,292,290	1,452,412,05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374,967,160	O
						노원구	23,204,800	O
						마포구	8,258,310	O
						관악구	15,342,240	O
						양천구	12,518,520	X
						동대문구	7,122,640	O
						금천구	4,993,580	X
		2015	2,415,764,370	76,831,53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76,831,530	O
전라북도	5,510,360					O		
충청남도	2,884,020					X		
3	장애이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2015	440,585,740	536,220	서울특별시	성동구	536,220	X
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015	333,859,000	333,859,000	전라남도	목포시	333,859,000	X
5	어린이집 기능보강	2015	106,472,660	28,406,520	강원도	원주시	22,228,380	X
						삼척시	3,635,700	X
						영월군	126,650	X
						고성군	1,105,570	X
						철원군	1,310,220	O

연번	사업명	사업 연도	집행잔액 (2017. 2. 22.기준)	미반납 금액	시·도명	미반납 현황 (‘2017. 2. 22.기준)						
						시도	금액 (2017본예산미반영금액)	2017년 본예산 반영 여부				
6	어린이집 확충	2013	302,158,190	267,857,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267,857,000	O				
						2014	2,987,762,830	381,460,0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381,460,000	X
						2015	3,139,490,020	290,394,270	서울특별시	종로구	281,460,000	X
		중구	1,064,460	X								
		강동구	7,869,810	O								
7	영유아보육료지원	2014	1,986,618,590	538,262,890	서울특별시	송파구	537,952,390	O				
						동대문구	310,500	O				
		2015	1,935,782,870	329,459,720	서울특별시	강동구	182,144,240	O				
						성동구	89,937,040	O				
						송파구	57,378,440	O				
8	보육돌봄서비스	2015	1,647,899,330	65,293,630	서울특별시	성동구	33,834,580	O				
						강동구	29,598,990	O				
						서대문구	36,300	O				
						서초구	1,823,760	O				
		145,194,450	3,468,76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3,468,760	X					
9	시간차등형 보육시범사업	2014	221,808,280	5,447,520	서울특별시	도봉구	3,496,190	O				
						강동구	1,951,330	O				
		2015	223,870,940	79,911,790	서울특별시	종로구	46,451,460	X				
						성동구	28,230,750	O				
						강동구	5,229,580	O				
10	가정양육수당	2015	273,245,200	73,615,500	서울특별시	성북구	15,672,000	X				
						송파구	35,723,500	O				
						강동구	22,220,000	O				
1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015	258,365,260	26,727,460	서울특별시	구로구	16,437,600	X				
						성동구	10,289,860	O				
12	방과후 돌봄 서비스	2015	103,200,750	103,200,75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03,200,750	O				
13	노인일자리	2013	158,959,230	150,876,67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50,876,670	O				
						2014	667,120,070	624,986,81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624,986,810	O
		2015	3,382,556,010	458,856,850	서울특별시	성동구	36,330	X				
						은평구	119,530	X				
						서울특별시	371,845,130	O				
						성동구	86,855,860	X				
679,462,730	40,163,120	부산광역시	영도구	40,163,120	X							

연번	사업명	사업 연도	집행잔액 (2017. 2. 22.기준)	미반납 금액	시·도명	미반납 현황 (‘2017. 2. 22.기준)		
						시도	금액 (2017본예산미반영금액)	2017년 본예산 반영 여부
14	노인돌봄서비스	2014	1,444,505,430	233,774,4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33,774,400	○
						서울특별시	44,242,000	○
		2015	661,800,440	69,878,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122,050	○
						성동구	16,953,830	○
						도봉구	311,680	○
						강동구	8,248,630	○
15	노인요양시설	2015	107,793,850	68,229,69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68,229,690	○
16	기초연금	2015	5,861,274,000	5,490,794,43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5,193,731,000	○
						성동구	297,063,430	○
17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015	383,022,570	332,866,940	서울특별시	강서구	6,017,760	X
						서울특별시	326,849,180	○
18	자활사업	2014	2,304,811,770	374,137,18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373,825,290	○
						동대문구	35,630	X
						강북구	153,150	X
						영등포구	123,110	○
		2015	2,051,555,230	472,401,82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392,030,000	X
						광진구	37,792,940	X
						강동구	42,494,770	○
						영등포구	84,110	○
19	통장사업	2013	145,072,800	4,903,800	서울특별시	광진구	1,414,800	○
						동대문구	1,963,800	○
						강동구	1,525,200	○
		2014	124,852,850	15,028,590	서울특별시	강동구	6,221,110	○
						광진구	6,495,530	○
						동대문구	696,600	○
						성동구	1,615,350	○
		2015	254,700,160	51,684,97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35,971,000	○
						강동구	15,711,000	○
						동대문구	2,970	○

연번	사업명	사업 연도	집행잔액 (2017. 2. 22.기준)	미반납 금액	시·도명	미반납 현황 (‘2017. 2. 22.기준)			
						시도	금액 (2017본예산미반영금액)	2017년 본예산 반영 여부	
20	긴급복지	2015	122,681,530	122,681,530	서울특별시	도봉구	122,681,530	X	
21	(일반)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2013	115,902,510	36,687,470	서울특별시	송파구	36,687,470	O	
						2015	1,696,736,800	233,271,5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6,161,000	X
							중구	6,362,410	X
							송파구	9,525,820	O
							강동구	43,371,870	X
							강동구	1,955,780	O
							관악구	7,393,700	O
							성동구	66,004,920	O
							강남구	26,600	O
22	(특별)지역자율형사 회서비스	2015	512,608,540	6,433,090	충청남도	충청남도	47,850	O	
						태안군	6,385,240	X	
23	건강증진기금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2015	552,825,270	123,045,0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3,956,000	O	
						용산구	33,672,570	O	
						강동구	65,416,430	O	
24	건강증진기금 (모자보건)	2015	591,087,630	32,947,760	서울특별시	성동구	32,947,760	O	
25	건강증진기금 (영유아건강관리)	2015	235,326,150	1,420	서울특별시	성동구	1,420	O	
26	건강증진기금 (국가예방접종)	2015	2,446,921,140	242,999,77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94,800	O	
						송파구	242,904,970	O	
27	건강증진기금 (국가결핵)	2015	186,828,600	186,828,6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86,772,490	X	
						도봉구	56,110	X	
28	건강증진기금 (금연지원서비스)	2015	952,440,170	142,515,82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42,515,820	X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반환금 보유 현황

(단위: 원)

번호	사업명	사업 연도	집행잔액 (2017. 2. 22기준)	시·도명	반환금 보유금액 (세입세출외 현금)
	총계		27개 사업		39,457,783,200
1	자활사업	2012	231,428,220	서울특별시	231,428,220
		2013	395,397,660	서울특별시	395,397,660
		2014	2,304,811,770	서울특별시	1,930,674,590
		2015	2,051,555,230	서울특별시	1,579,153,410
2	장애인 연금	2015	11,442,287,930	서울특별시	281,129,250
3	장애인 활동 지원	2012	709,770,290	서울특별시	401,350,920
		2013	2,433,654,980	서울특별시	2,421,621,960
	2014	1,849,292,290	서울특별시	396,880,240	
		319,308,540	충청남도	319,308,540	
	2015	2,415,764,370	서울특별시	2,338,932,840	
		704,767,760	광주광역시	704,767,760	
		181,632,550	충청남도	178,748,530	
		479,301,990	전라북도	473,791,630	
4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2015	440,585,740	서울특별시	440,049,520
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015	1,904,190,390	충청남도	1,904,190,390
6	장애인일자리	2015	136,197,920	경상북도	136,197,920

번호	사업명	사업연도	집행잔액 (2017. 2. 22기준)	시·도명	반환금 보유금액 (세입세출외 현금)
7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2015	665,937,170	서울특별시	665,937,170
			475,648,190	충청남도	475,648,190
8	어린이집 기능보강	2015	106,472,660	강원도	78,066,140
9	어린이집확충	2012	173,563,000	서울특별시	173,563,000
		2013	302,158,190	서울특별시	34,301,190
		2014	2,987,762,830	서울특별시	2,606,302,830
			254,094,390	경기도	254,094,390
		2015	3,139,490,020	서울특별시	2,849,095,750
10	영유아보육료지원	2014	1,986,618,590	서울특별시	1,448,355,700
		2015	1,935,782,870	서울특별시	1,606,323,150
11	보육돌봄서비스	2015	1,649,430,780	서울특별시	1,584,137,150
			145,194,450	대전광역시	141,725,690
12	시간차등형보육시범	2014	221,808,280	서울특별시	216,360,760
		2015	223,870,940	서울특별시	143,959,150
13	가정양육수당	2015	273,245,200	서울특별시	199,629,700
1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015	258,365,260	서울특별시	231,637,800
15	노인일자리	2013	158,959,230	서울특별시	8,082,560
			667,120,070	서울특별시	42,133,260
		2015	3,382,556,010	서울특별시	2,923,699,160
			679,462,730	부산광역시	639,299,610
16	노인돌봄서비스	2014	1,444,505,430	서울특별시	1,210,731,030
		2015	661,800,440	서울특별시	591,922,250

번호	사업명	사업 연도	집행잔액 (2017. 2. 22기준)	시·도명	반환금 보유금액 (세입세출외 현금)
17	노인요양시설	2015	107,793,850	서울특별시	39,564,160
18	기초연금	2015	5,861,274,000	서울특별시	370,479,570
19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2015	383,022,570	서울특별시	50,155,630
20	통장사업	2013	145,072,800	서울특별시	140,169,000
		2014	124,852,850	서울특별시	109,824,260
		2015	254,700,160	서울특별시	203,015,190
21	(일반)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2013	115,902,510	서울특별시	79,215,040
		2015	1,696,736,800	서울특별시	1,463,465,300
22	(특별)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2015	512,608,540	충청남도	506,175,450
23	건강증진기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2015	552,825,270	서울특별시	429,780,270
24	건강증진기금 (모자보건)	2015	591,087,630	서울특별시	558,139,870
25	건강증진기금 (영유아건강관리)	2015	235,326,150	서울특별시	235,324,730
26	건강증진기금 (국가예방접종)	2015	2,446,921,140	서울특별시	2,203,921,370
27	건강증진기금 (금연지원서비스)	2015	952,440,170	서울특별시	809,924,350

자료: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복지부는 2014. 12. 3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²¹⁾(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정에 따라 복지사각을 해소하기 위해 단전·단수 등의 정보를 연계²²⁾하여 2016년에 6만 7천여 명의 사회보장 수급자를 발굴·지원하였다.

그런데 매년 확인조사 과정에서 [표 1]과 같이 23만여 명의 수급자가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수급자격을 상실하고 있는 반면, 2017년 4월 현재 14개 중앙부처에서 278개²³⁾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수급권자 스스로가 어떤 복지사업의 수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손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1) 2014. 2. 26. 송파구의 세 모녀가 생활고와 만성질환에 시달리다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복지사각 계층을 발굴할 목적으로 같은 해 12. 3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

22) 사회보장급여법을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5. 12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구축, 단전·단수 등 24종의 외부 연계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건강·장애 등 30종의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복지사각 대상자를 발굴·지원 중임

23) 전체 22개 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 기준

[표 1] 연도별 확인조사에 따른 수급자격 탈락자 수

(단위: 명)

연도	합계	상반기	하반기
연평균	236,572	122,488	114,085
합계	1,656,005	857,413	798,592
2010년	174,835	174,835	-
2011년	273,994	138,915	135,079
2012년	139,760	139,760	-
2013년	174,554	24,604	149,950
2014년	204,915	100,186	104,729
2015년	311,526	105,386	206,140
2016년	376,421	173,727	202,694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자료 재구성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1항 및 제9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²⁴⁾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법 제4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법 제16조에 따르면 시·군·구의 사회보장업무 담당자가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사업을 안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관리 중인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4)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의 사회보장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고 규정

따라서 위 관서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효율적으로 발굴되고 적합한 복지사업을 안내받아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된 정보를 활용하고 기타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받아²⁵⁾ 복지사업 신청 탈락자 등의 수급자격을 선제적·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시·군·구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위 관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후 단전·단수 등의 정보를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활동은 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보관 중인 수급권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수급자를 발굴하는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8. ~ 4. 18.) 중 수급자격 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위 시스템에 저장된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정보를 검토하여 각종 다른 복지사업에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모의분석하였다.

가. 통합조사 방식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보건복지부는 신청자의 인적구성·소득·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계산된 소득인정액²⁶⁾ 등을 기초로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기초생계급여 등 13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2016년 하반기 실시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서 탈락하거나 2017년 2월까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328,112가구(819,698명)를 대상으로 기초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등 8개 사업²⁷⁾에 대하여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모의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1,377가구(1,759명)가 기초연금 등의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5) 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

26)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해 계산하는 금액

27) 13개 사업 중 행복e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적격 여부를 예상할 수 있는 8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

【 발골 사례 】

- 2017년 1월 장애인연금 등을 신청한 부산시 연제구 의 경우 행복e음에 등재된 그의 가족 중 어머니 J에 대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 중 2017년 4월 기준으로 모의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

[표 2] 통합자격 복지사업의 예상 적격대상자 시뮬레이션 결과

(단위: 가구, 명)

연번	분석대상 가구수 및 인원	사업명	적격 예상 가구		각 사업별 시뮬레이션 수행의 한계점
			가구	대상자	
		계	1,377	1,759	-
1	328,112가구 (819,698명)	기초연금	1,210	1,210	가구구성상 1인가구에 한정하여 추출, 현재 신청중인 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167	549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파악 필요

주: 적격예상가구는 소득·재산정보 위주로 분석된 결과로서 사업에 따라 추가 자격요건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된 수급자격 판정 결과는 아님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나. 개별조사 방식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보건복지부는 통합조사 방식과 별도로 개별 사업의 수급 조건에 따라 신청자의 다른 자격정보, 건강보험료 및 특례 요건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를 결정²⁸⁾하는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4월 말 기준, 개별적으로 자격 조사를 수행하는 복지사업에서 요건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중지한 자, 요건 미비로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 255,959명을 대상으로 모의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컨대 자활근로 참여자가 감사일 현재까지 차상위 양곡할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28)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자격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를 결정함, 예를 들어 개별조사 방식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차상위 양곡할인의 경우 차상위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정부양곡 구입 시 할인 혜택을 제공

모의분석 대상자들이 차상위 양곡할인, 자산형성사업 3종²⁹⁾, 전자바우처 등 5개 개별자격 사업³⁰⁾의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모의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268명이 차상위 양곡할인 등에서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발굴 사례 】

- 경상북도 구미시 K의 경우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차상위 자활근로에 참여중에 있으나, 차상위 양곡할인 신청을 한 바가 없어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표 3] 개별자격 복지사업의 예상 적격대상자 시뮬레이션 결과¹⁾

(단위: 명)

분석대상		사업명	적격 예상자	각 사업별 시뮬레이션 수행의 한계점
개별자격	인원수			
계	255,959	계	268	
2016년 차상위 자활사업 수급자 ²⁾	6,241	차상위 양곡할인	154	
2016년 희망키움통장(I) 탈락자 ³⁾	31,471	자산형성사업 [희망키움통장 (II)]	29	근로소득사업 추가 확인 필요 유사사업 중복 확인 필요
2016년 전자바우처 신청자 ⁴⁾	218,247	전자바우처	85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추가 확인 필요

- 주: 1. 적격예상가구는 다른 자격보유 여부로 확인된 결과로서 사업에 따라 추가 자격요건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된 수급자격 판정결과와는 아님
 2. 2017년 4월 말 기준 차상위 자활사업 수급자의 경우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실시
 3. 2017년 1월부터 4월에 내일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I)을 신청하여 탈락한 사람을 기준으로 파악
 4. 특정 전자바우처 사업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다른 전자바우처 사업에서 수급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 (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자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다. 범정부 사업

2017년 3월 현재 14개 중앙부처에서 278개의 범정부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3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 중 고3 졸업생(예비 대학생),

29)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I),(II)

30) 수급자 선정 요건이 유사하고 행복e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적격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5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의 자³¹⁾ 등 2,775,304명 및 2016년 이후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92,755가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위 대상자들이 [표 4]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³²⁾(보건복지부), 스포츠강좌 이용권³³⁾ 및 통합문화이용권³⁴⁾(문화체육관광부), 국가장학금³⁵⁾(교육부), 임대주택사업³⁶⁾(국토교통부) 등의 수급자격이 있는지 모의분석하였다.

[표 4] 모의분석 대상 복지사업 개요

(단위: 백만 원)

부처명	사업명	수급 조건
보건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만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5~18세)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6세 이상)
교육부	국가장학금(I, II 유형)	저소득층 신입생, 재학생(성적 기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 무주택자 + 신청이력이 없는 경우
	국민임대주택공급	
	기존주택전세임대	
	다가구 등 기존주택매입임대	
	영구임대주택공급	
	장기전세주택공급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모의분석 결과,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복지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수급권자(가구)가 [표 5]와 같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4개 사업 계 754,483명이고, 공공주택공급 등 6개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 계 70,613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요양등급(1~5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으로 A, B, C등급으로 분류
 3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외로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안내,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복지서비스 발굴/연계, 생활교육, 안전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서비스 제공
 33)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4개월간 매월 80,000원 까지 스포츠 활동 강좌비 지급
 34) 6세 이상 수급자에게 개인당 6만 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35)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소득구간에 따라 등록금의 일정비율 지원
 36)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 자산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사업 지원

【 발굴 사례 】

- 2017년 4월 현재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인 부산시 L의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의 수급자격이 있으나 해당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요건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표 5] 법정부 복지사업의 예상 적격대상자 시뮬레이션 결과

(단위: 명, 가구)

사업명	추출 대상		시뮬레이션 조건	추출 결과	사업별 시뮬레이션 수행의 한계점
	추출대상 기준	인원수, 가구수			
계		2,775,304명, 92,755가구		754,483명, 70,613가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2016년 이후 장기요양등급 외의 자	18,504명	① 노인돌봄기본 및 중복 불가사업 지원자 제외 ② 노인시설 입소자 제외 ③ 독거노인 여부	7,942명	독거 및 사망 여부 확인 필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수급자	5~18세 476,752명	① 통합문화 및 스포츠강 좌 이용권 수급이력자 제외	89,483명	선착순 신청
통합문화 이용권		6세 이상 2,207,202명		605,290명	
국가 장학금 (I, II유형)	고교학비·교육급여 수급자 중 고3 졸업생 (1998년 3월~1999년 2월생)	72,846명	① 2017년 1학기 국가장 학금(I, II유형) 신청자 제외	51,768명	대상자의 대학 입학 및 성적 정보 필요
임대주택 사업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자격 신규 취득자	92,755가구	① 주택 보유가구 제외 ② 임대주택 서비스 신청 이력가구 제외	70,613가구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결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수급자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각종 사회보장사업의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지 않고 있어 복지사각 해소를 위한 사업들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정기적인 수급권자 확인을 통해 수급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 신청안내를 할 수 있도록 관계 사업부처(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하여 수급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정보를 시·군·구 및 관계 부처에 알려주어 복지사업 신청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유예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각 시·군·구 등으로 하여금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하여 자활에 필요한 사업³⁷⁾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조건부수급자 중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거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도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는 전산자료 조회 및 통합조사관리팀의 조사를 거친 후 [표]와 같이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 대해 최대 6년까지, 교도소

37) 위 관서가 추진하는 자활사업에는 자활사례관리(게이트웨이 포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지원 사업, 자활 촉진 프로그램(자활장려금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이 있음

출소자 등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
 까지 조건부과 유예³⁸⁾를 할 수 있고, 유예기간 종료 즉시 조건부수급자로 변경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표] 대학생 및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조건부과 유예기준

대상	기준	제출서류	
대학생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등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고등교육법」 제2조) ※ 야간대학생 포함 ※ 휴학 중인 경우 대학생이라는 사유로 조건부과 유예를 받을 수 없음 ※ 대학생이라는 사유로 조건부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은 6년으로 제한	재학증명서, 학점수강내역 증빙서류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병역법」에 의한 입영 예정자 또는 전역자	입대에정일이 속한 달의 전월 1개월과 전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개월	입영 및 전역 증빙서류
	교도소 등에서 6개월 (180일) 이상 수용 되었다가 출소한 자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서의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출소증빙서류, 경찰서·교도소 등의 확인서류
	보장시설 ^{주)} 에서 퇴소한 자	보장시설 퇴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시설에 확인
	학교졸업(중퇴)자	다음의 학교 졸업(중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월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졸업증명서 또는 사실확인조사서
	질병(수술 이상) 또는 부상으로 2개월(60일)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자	질병·부상으로부터 회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주: 해당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7. 5. 30.)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각 시·군·구가 유예기간이 종료된 조건부과 유예자를
 조건부수급자로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거나 유예 종료 일자를 임의로 설정
³⁹⁾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하 “행복e음”이라 한다)에는
 유예기간 종료 즉시 조건부수급자로 자동 변경하는 기능 등을 마련하여야 했다.

38) 「2017년도 자활사업안내」에서 ‘조건부과 제외’ 용어를 ‘조건부과 유예’로 일괄 변경함

39) 2013. 4. 11.부터 각 시·군·구 담당자는 조건부과 유예자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70일 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변동알림’
 기능을 통해 조건부과 유예자의 변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유예 종료 일자를 임의로 설정할 경우 ‘변동알림’ 기능을 도입한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아 조건부과 유예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음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보건복지부는 각 시·군·구 담당자가 조건부과 유예자의 유예 종료 일자를 임의로 설정⁴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e음에 조건부과 유예 사유별로 종료 일자가 자동으로 설정되게 하거나 조건부과 유예 종료 즉시 조건부수급자로 자동 변경 되도록 하는 등의 기능은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8.~4. 18.) 중 행복e음에서 조건부과 유예 대상 가운데 ‘대학생’과 ‘교도소 출소자’라는 사유로 조건부과를 유예받은 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전산 추출하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 행복e음 전산자료 추출기준 】

1. 대학생이라는 사유로 조건부과 유예된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 현황

▶추출대상: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⁴¹⁾ 사이에 대학생이라는 사유로 최초 유예 결정된 수급자

▶추출방법

- 조건부과 유예 종료 일자가 6년이 경과된 대상자를 추출

- 생계급여 지급액⁴²⁾: 이미 지급된 생계급여액 - 해당 인원의 가구원 산정 제외 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

※ 급여 지급 시 차감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산정 제외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

2. 교도소 출소자라는 사유로 조건부과 유예된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 현황

▶추출대상: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⁴³⁾ 사이에 교도소 출소자라는 사유로 최초 유예 결정된 수급자

▶추출방법

- 조건부과 유예 종료 일자가 3개월이 경과된 대상자를 추출

- 생계급여 지급액: 이미 지급된 생계급여액 - 해당 인원의 가구원 산정 제외 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

※ 급여 지급 시 차감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산정 제외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

40) 조건부과 유예자의 유예 종료 일자를 9999.12.31로 설정한 경우도 있었음

41) 대학생의 경우 최대유예기간 6년을 감안하여 자료추출 기간을 2010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로 설정하였으며, 2010년 1월에 최초로 조건부과 유예 결정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2016년 2월부터 유예기간 경과로 볼 수 있음

42) 현 급여 체계는 수급자 개인이 아닌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조건부과 유예 기간을 경과한 당사자에게 지급된 생계급여의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는 곤란함

43) 교도소 출소자의 경우 최대 유예기간 3개월을 감안하여 자료 추출 기간을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로 설정하였으며, 같은 해 1월에 최초로 조건부과 유예 결정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같은 해 5월부터 유예기간 경과로 볼 수 있음

그 결과 대학생의 경우 [별표 1] “대학생이라는 사유로 조건부과 유예된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 명세”와 같이 2010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 조건부과 유예 결정을 받은 743명 중 65명⁴⁴⁾에 대해 최대 유예기간인 6년을 경과한 후에도 조건부 수급자로 자격을 전환하지 않아 2017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이들에게 총 141,506,700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교도소 출소자의 경우 [별표 2] “교도소 출소자라는 사유로 조건부과 유예된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 명세”와 같이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 조건부과가 유예된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3,133명 중 338명⁴⁵⁾이 조건부 수급자로 자격이 전환되지 않아 2017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이들에게 총 1,495,500,840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 조건부과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 사례 】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사는 M은 2010. 6. 16. 대학생이라는 사유로 조건부과 유예 결정을 받았으나 최대 유예기간인 6년이 경과한 후에도 10개월 동안 여전히 조건부과 유예자로서 계 2,272,620원의 생계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추정
- 충북 청주시에 사는 N은 2015. 8. 13. 교도소 출소자로서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과 유예 결정을 받았으나 최대 유예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16개월 동안 조건부과 유예자로서 계 6,776,470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

44) 행복e음을 통해 추출한 전산자료와 관련하여 시·군·구는 해당 기간 중 군입대한 17명과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1명(1명 제외 시 생계급여 지급 추정액: 137,153,020원) 등 변동 사항이 있었음을 소명하였으나, 이는 수급자와의 면담 내용에 근거하고 있어 추후 공적자료를 통해 점검하여 보다 정확한 생계급여의 지급 기간 및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45) 행복e음을 통해 추출한 전산자료와 관련하여 시·군·구는 해당 기간 중 교도소에 재입소한 38명과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166명(166명 제외시 생계급여 지급 추정액: 589,679,970원) 등 변동사항이 있었음을 소명하였으나, 이는 수급자와의 면담 내용에 근거한 것이고 조건부과 유예기간의 경과 후에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사례도 있어 추후 공적자료를 통해 점검하여 보다 정확한 생계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추후 시·군·구를 통해 조건부과 유예관리 대상을 일제히 정비하여 현행화하는 등 조건부과 유예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시·군·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부과 유예 종료 일자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유예 사유별로 종료 일자가 자동으로 설정되게 하고 유예 종료 일자가 경과되는 경우 시·군·구의 별도 조치가 없는 한 조건부수급자로 변경되도록 하는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개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시·군·구가 유예기간이 종료된 조건부과 유예자를 조건부수급자로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거나 유예 종료 일자를 임의로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조건부과 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건부수급자로 자동 변경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조건부과 유예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 표 1]

대학생이라는 사유로 조건부과 유예된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 명세

(단위: 명, 원)

시도명	생계급여 지급액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 경우 생계급여 지급액	
	유예기간 경과자 수	유예기간 경과 후 당사자에게 지급된 생계급여	유예기간 경과자 수	유예기간 경과 후 당사자에게 지급된 생계급여
서울특별시	8	22,209,700	8	22,209,700
부산광역시	8	16,723,300	8	16,723,300
대구광역시	6	11,769,810	6	11,769,810
인천광역시	5	11,094,070	5	11,094,070
광주광역시	5	10,396,640	5	10,396,640
대전광역시	6	9,273,910	6	9,273,910
울산광역시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경기도	7	16,426,130	7	16,426,130
강원도	6	13,873,840	6	13,873,840
충청북도	1	2,327,670	1	2,327,670
충청남도	1	4,353,680	-	-
전라북도	5	8,087,620	5	8,087,620
전라남도	1	3,982,650	1	3,982,650
경상북도	2	3,568,360	2	3,568,360
경상남도	3	5,752,500	3	5,752,500
제주특별자치도	1	1,666,820	1	1,666,820
계	65	141,506,700	64	137,153,020

주: 1.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에 '대학생'이라는 사유로 최초 유예 결정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

2. 생계급여 지급기간은 유예기간 경과 후부터 감사일 현재 2017년 3월까지를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교도소 출소자라는 사유로 조건부과 유예된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 명세

(단위: 명, 원)

시도명	생계급여 지급액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 경우 생계급여 지급액	
	유예기간 경과자 수	유예기간 경과 후 당사자에게 지급된 생계급여	유예기간 경과자 수	유예기간 경과 후 당사자에게 지급된 생계급여
서울특별시	52	239,756,160	28	106,016,630
부산광역시	58	262,790,970	26	82,321,700
대구광역시	28	144,688,470	8	31,726,140
인천광역시	27	134,391,460	16	75,545,120
광주광역시	10	55,801,100	6	20,955,000
대전광역시	14	62,682,070	7	25,839,880
울산광역시	6	22,146,160	2	2,580,390
세종특별자치시	2	3,029,210	2	3,029,210
경기도	31	125,989,030	19	72,430,480
강원도	12	47,054,650	7	19,212,590
충청북도	12	52,764,030	6	19,487,780
충청남도	7	27,654,070	4	8,337,040
전라북도	10	43,010,300	7	26,459,930
전라남도	19	77,876,320	13	34,730,580
경상북도	14	48,832,150	8	25,533,680
경상남도	32	137,316,400	9	25,755,530
제주특별자치도	4	9,718,290	4	9,718,290
계	338	1,495,500,840	172	589,679,970

주: 1.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 '교도소 출소자'라는 사유로 최초 유예 결정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

2. 생계급여 지급기간은 유예기간 경과 후부터 감사일 현재 2017년 3월까지를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연계 등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2010년 1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17년 4월 현재까지 이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보장 수급자 선정 및 급여관리 등 업무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그림]과 같이 일선 시·군·구가 사용하는 “행복e음”과 복지사업을

[그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성도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수행하는 다른 중앙부처가 사용하는 “범정부시스템”으로 나뉘고, 행복e음과 범정부 시스템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합DB에는 2017년 4월 현재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2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격 및 수급이력 정보가 수신·관리되고 있다.

시·군·구와 각 부처 복지사업 담당자는 각각 행복e음과 범정부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별 복지사업 수급이력 전체를 조회하고 민원인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을 해소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사망 등 수급자격 변동에 따른 부적정 지급이나 유사사업 간 중복수급이 의심되는 검토대상을 추출하여 각 부처에 제공하고 이를 환수하도록 하는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8.~4. 18.)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당초 구축 목적에 따라 복지사업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제공받은 정보를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2. 고교학비 지원사업 수급이력 등 정보 미입수로 인한 통합DB 구축 미흡

가. 관계법령(판단 기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1년 7월 “행복e음 기반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체계 구축계획”(이하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3년 2월까지 교육부의 ‘고교학비 지원사업’ 등 16개 부처의 289종⁴⁶⁾ 복지사업의 수급자격 및 수급이력 정보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통합DB에 연계하여 제공받도록 계획하였고, 관련부처와 협의⁴⁷⁾를 진행하였다.

46) 2011년 7월 당시 기준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통합DB 연계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초 계획 및 부처 간에 협의한 대로 관련 부처로부터 필요한 정보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부처에 정보제공을 재요청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보건복지부는 위 내용과 같이 교육부의 고교학비 지원사업의 수급이력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기로 계획하고, 2013. 5. 28.까지 연계를 완료하기로 교육부와 협의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당초 계획 및 협의내용과 다르게 시스템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7년 4월 현재까지 교육부로부터 고교학비 지원사업의 수급이력 정보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여 교육부에 정보제공을 재요청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고교학비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기초교육급여 등과의 중복수급 현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2016년 고교학비 지원사업의 수급이력(수업료)을 제공받아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통합DB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교육급여 등의 수급이력(수업료)과 중복수급 여부를 분석⁴⁸⁾하였다.

47)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체계 구축” 사업 관련 기관 방문 협조 요청(2011. 9. 30., 총괄팀-55) 등 관련 부처와 정보 통합관리에 대하여 협의 진행

48) 보건복지부는 범부처 복지사업의 수급자격 및 수급이력을 각 부처로부터 제공받아 중복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62개 복지사업의 수급이력 등을 분석하여 중복수급이 의심되는 현황을 매월 추출하여 관련 부처에 통보하고, 관련 부처는 이를 근거로 중복수급 방지업무를 수행

그 결과 [표 1]과 같이 고교학비 지원사업과 중복수급이 의심되는 378,657,910원 (624명)의 지급 건이 있었으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교육부 등에 관련 현황을 통보하지 못하였다.

[표1] 중복지급으로 의심되는 검토대상 추출 현황(2016년)

(단위: 명, 원)

연번	소관 부처	급여서비스명	인원수	지급액
1	교육부	기초교육급여	614	363,860,150
2	보건복지부	긴급복지교육지원	-	-
3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국비지원	-	-
4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복지사업(장학금)	10	14,797,760
계			624	378,657,910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분석결과 중 396⁴⁹⁾명(1.7억 원)에 대해 감사기간 중 교육부가 중복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7년 4월 현재까지 경기교육청 등 6개 교육청에서 O 등 57명이 소속된 학교에 교육비 20,384,120원을 중복하여 지급하고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장 125일⁵⁰⁾이 지나서야 환수할 수 있었다.⁵¹⁾

또한 P의 경우 부산교육청과 근로복지공단에서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각각 고교학비 지원사업과 산재근로자복지지원(장학금)으로 1,747,400원을 소속 학교에 중복해서 지급하였으나 2017년 4월 현재까지 환수하지 않고 있는 등 위 사람을 포함한 4명에 대해서는 중복지급한 교육비 2,234,800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49) 전체 검토대상 916명 가운데 사회보장정보원이 1차로 추출한 명단으로 이 중 136명은 한부모가족 수급자로 전체 교육비의 20%는 한부모가족교육비지원사업에서, 80%는 고교학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되어 수급자가 동일인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중복금지유형으로 설정해놓은 관계로 중복수급 의심대상으로 추출되었고, 199명은 학교로부터 명단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50) O의 경우 2016. 11. 3. 기초교육급여를 소속 학교에 지급하였으나 2017. 3. 8. 자체 결산 과정에서 반납하여 지급일로부터 125일이 지나서 정산 납부됨

51) 2015년 7월 이후 교육비를 학생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소속 학교에 수업료를 지원해주고 있어 학교 자체 결산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거나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지원 금지유형에 해당하는 각 부처 복지사업의 수급이력을 입수하는 경우 중복수급 의심현황을 매일 추출하여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여 환수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중복수급 관리가 가능

결국 복지부가 고교학비 지원사업의 수급이력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여 교육청에 중복지급 의심대상을 통보하지 못하게 되어 중복지급된 교육비 등을 조기 발견 및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중복지급 사후관리 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되었다.

3. 중복수급 사전 차단을 위한 시스템 연계 부실

가. 관계법령(판단 기준)

중복수급이 금지되는 복지사업 간 중복수급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시스템과 각 부처의 복지시스템 사업을 연계하여 복지사업 신청인이 중복수급을 금지하는 사업에서 이미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각 부처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행복e음에는 신청, 접수, 수급자결정,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복지사업의 경우 수급자격 및 수급이력이 통합DB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중복수급이 금지되는 복지사업 간에 자동으로 수급자 결정을 보류하는 사전 차단 기능이 구축되어 있다.

특히, 현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와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예: 노인 돌봄기본서비스⁵²⁾)의 경우 중복지원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환수도 할 수 없으므로 중복 수급이 우려되는 경우 서비스가 사전에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보건복지부의 재가급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7년도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 등에 따라 사업목적⁵³⁾이 유사하여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52) 현금 지급이 아니며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이 수급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안전확인, 가사 도우미 등 서비스 제공

53)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국가보훈처): 청소 등 가사활동지원, 건강관리 지원 및 노인의료용품 지원

그리고 위 3개 재가서비스의 경우 수급자격 결정 정보가 통합DB로 매일 제공되고 있어 각 부처가 수급자를 결정할 때 신청인의 수급이력을 범정부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각 부처 시스템에 회신하고, 회신결과 중복수급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자 결정을 보류하는 등으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복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2011년 범정부시스템에서 중복수급 관리 기능을 구축하면서 각 부처 시스템에서 수급자격 및 수급이력 정보가 통합DB에 실시간으로 입수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행복e음과 다르게 사전에 중복수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선지원 후에 중복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관리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⁵⁴⁾

【 중복수급이 금지되는 사업 간 지원 사례 】

- Q의 경우 2008. 10. 27.부터 국가유공자재가복지서비스 수급자로 결정되어 2017년 4월 현재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각 부처 시스템 간 중복수급을 사전 차단하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3. 6. 12.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도 중복수급자로 책정되는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중단된 2016. 8. 2.까지 3년 간 중복수급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그 결과 [표 2]와 같이 2013년부터 2016년 12월 현재까지 위 3개 재가서비스 간 중복지급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여 계 743명에 대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년 간 중복수급이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중복지급될 우려가 있다.

54)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경우 수급자 조사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중복금지사업의 수급이력을 조회하는 프로세스는 있으나 최종 수급자격 결정 시 중복금지사업 수급이력에 대한 확인 및 자격 결정 보류기능이 없어 사전차단 기능이 부실

[표 2] 재가서비스 간 중복수급 현황

(단위: 명)

서비스명	지급인원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선순위)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후순위) 간 중복	524
재가급여(선순위)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후순위) 간 중복	219
계	743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또한 위 3개 재가서비스에 대해 중복수급 사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6년 보건복지부가 매월 1회씩 추출하여 해당 사업담당 부서(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⁵⁵⁾)에 통보한 중복수급 검토대상 981건⁵⁶⁾을 분석한 결과, 그중 964건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이미 종료된 후에 중복검토 대상자료가 추출되어 사후관리 실익이 없었고 나머지 17건은 중복수급 검토대상이라고 2016. 1. 20. 해당 사업담당 부서에 통보하였으나 통보를 받은 지 5개월이 지난 같은 해 7. 4.이 돼서야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등 사후관리 중심의 중복수급 관리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통합 DB에 수집되지 않고 있던 고교학비 지원사업의 수급이력 정보 등을 수집하여 주기적으로 중복수급 관리를 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3개의 재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사전 차단 체계로 전환·관리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5)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재가급여에 비해 후순위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에 중복수급 검토대상을 매월 1회 추출하여 통보하고 있음

56) 2013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중복수급 검토대상으로 추출된 지원건수는 총 10,282건
 재가급여(보건복지부): 가사활동지원 등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복지용구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보건복지부): 정기적인 안전확인, 복지서비스 연계 및 생활교육 지원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교육부에 고교학비 지원사업의 수급이력 등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재요청하여 이를 제공받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재가복지서비스 등 3종의 재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중복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소득기준을 초과한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 미증지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행복e음시스템을 통하여 수급자·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⁵⁷⁾ 산정을 통한 보장자격 결정 등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29%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⁵⁸⁾에 입소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자에게 각각 [표]와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소득)을 넘을 때는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보장자격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다.

57)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58) 정부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표]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

구분	급여지급기준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의 29% - 소득인정액
보장시설에 입소한 생계급여 수급자	▪ 30인 미만 시설: 248,371원 ▪ 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 219,870원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시설: 216,777원 ▪ 300인 이상 시설: 216,208원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한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일반적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급여가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행복e음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반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가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행복e음시스템에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보장자격을 중지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수급자 현황을 파악하여 시·군·구 등 보장기관에 수급자의 보장자격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지도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8. ~ 4. 18.) 중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2017년 3월 현재 수급자 1,431명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이들은 선정기준을 초과한 기간 동안 급여액 합계 7억1,977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생계급여 수급자를 파악하여 시·군·구 등 보장기관에 보장자격을 중지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소득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보장자격 중지 및 급여액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기준을 초과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생계급여 수급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시·군·구 등 보장기관에 보장자격을 중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주거급여(임차료)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국토교통부

조 치 기 관 국토교통부

내 용

1. 업무 개요

국토교통부는 2015. 7. 1.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주거급여법」 제5조 및 제7조 등에 따라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⁵⁹⁾의 100분의 43 이하(2017년 기준: 4인 가구 192만 원/월)인 사람을 수급자(보장가구)로 선정하여 임차료(이하 “임차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92호) 제6조 및 제7조 등에 따르면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만 기준임대료⁶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고시 제9조에서는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에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이하 “사용대차⁶¹⁾”라 한다)에는 기준임대료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급여로 지급하도록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59)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함

60) 기준임대료란 수급자의 가구규모(예: 1인, 2인, 3인 등 가구원 수), 지역별 임대료 수준(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지역) 등을 고려하여 임차급여 지급 금액을 정함

61) 수급자가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예: 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 및 가사 노동, 주택관리 등)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형태를 말함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제9조 등에 따르면 주거급여 신청인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임차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주거급여 사업 안내」에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공사는 주거급여 주택조사⁶²⁾를 실시할 때 임대차 계약 내용, 가구원 현황, 주택 등을 임대 또는 제공하는 자와 수급자의 관계 등 임차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주거급여법」 제4조에 따르면 주거급여에 관하여 「주거급여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사회복지급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개별 가구 단위⁶³⁾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보장기관인 시·군·구는 수급자격을 판단하고 수급자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⁶⁴⁾”이라 한다)을 통해 가구 구성원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임대인의 사망 여부는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행정정보공동이용⁶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2) 주택조사는 신규 신청조사, 변경 신청조사, 수시조사, 이의 신청조사 등 보장기관이 의뢰하는 경우 및 한국토지주택 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시조사와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확인조사로 구분

63) 보장기관(시·군·구)은 가구를 단위(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도 가구를 단위로 산정

64)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

65) 각종 민원 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임

그리고 전담기관인 LH공사는 “주거급여정보시스템⁶⁶⁾”을 통해 수급가구 구성원끼리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시·군·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임차급여 신청자가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 계약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인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또는 동일 수급가구의 구성원을 임대인으로 하여 계약을 맺지는 않았는지 등 계약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여 허위계약 등에 대해서는 임차급여가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사업 안내」 지침에 임대인의 사망 여부 및 수급 가구원 간 계약 등 의심 수급자에 대한 점검 내용과 그 구체적인 사례와 요건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시·군·구는 수급자가 제출한 계약서상의 임대인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주거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 가구원과 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2017년 4월 기준으로 수급자가 체결한 계약의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수급 가구원과 계약을 맺는 등 허위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373명은 계약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141명은 수급 가구원끼리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의심 수급자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다.

66) 임차주택 주거급여(임차료) 지급 및 자가주택 개량·보수 지원(수선유지비) 등 주거급여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한 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급여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거급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표] 임대인이 사망자 및 수급 가구원으로 확인된 임차급여 지급 현황

(단위: 명, 원)

임대인이 사망자로 확인된 계약 (지급기간: 2015년 7월~2017년 4월)		임대인이 수급 가구원으로 확인된 계약 (지급기간: 2015년 7월~2017년 4월)	
수급자 수	지급금액	수급자 수	지급금액
373	935,872,800	141	285,828,340

자료: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 시·군·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조사 의뢰 전,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조사를 실시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업무지침에 “임대인의 사망 여부”, “임대인의 수급 가구원 여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앞으로 수급자가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할 때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확인조사 시에 위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군·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인의 사망 여부 및 수급 가구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자의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⁶⁷⁾를 대상으로 [표]와 같이 본인 저축액의 최대 6.1배까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I’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역시 조례⁶⁸⁾에 근거하여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자산형성지원사업 현황(2017년 4월 기준)

(단위: 만 원)

사업 주체	통장명	사업기간	주요대상	월 본인 적립금	지원내용
보건 복지부	희망키움 통장 I	2010년 4월 ~ 2017년 4월 현재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 (중위소득 40% 이하)	10	- 가구소득 비례, 월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본인저축액의 최대 6.1배, 만기 시 최대 2,600만 원) - 탈수급 (중위소득 40% 이상) 시 전액 지급
	희망키움 통장 II	2014년 7월 ~ 2017년 4월 현재	일하는 차상위 및 교육·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본인저축액의 1:1, 만기 시 720만 원) - 3년간 통장 유지, 교육 및 사용증빙 요건 충족 시 전액 지급
	내일키움 통장	2013년 3월 ~ 2017년 4월 현재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구)	5, 10	- 내일근로장려금 지급(본인저축액의 1:1) - 내일키움장려금 지급(최대 본인저축액의 1:1) - 내일키움수익금 지급(최대 월 15만 원) - 만기 시 최대 1,620만 원 지원 - 취·창업, 탈수급, 대학교 입/복학 시 전액 지급

67)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68) 서울특별시 자산형성사업은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16. 6. 2.) 제3조 제1항 제9호에, 경기도 자산형성사업은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2015. 8. 3.) 제2조, 제6조, 제9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

사업 주체	통장명	사업기간	주요대상	월 본인 적립금	지원내용
서울 특별시	희망플러스 통장 ^주	2007년 10월 ~ 2017년 4월 현재	서울특별시거주 만18세 이상 근로 중인 저소득가구 (중위소득 45~60% 이하)	10, 20	- 근로장려금(1:0.5매칭, 본인적립금의 50%) 지급 - 저축 만기 불입 시 전액 지급
	희망두배 청년통장	2015년 4월 ~ 2017년 4월 현재	서울특별시거주 만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본인소득 월 2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80% 이하)	5, 10, 15	- 근로장려금(1:0.5매칭, 본인적립금의 50%) 지급 - 저축 만기 불입 시 전액 지급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16년 5월 ~ 2017년 4월 현재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중위소득 80% 이하)	10	- 근로장려금(1:1.72 매칭, 도비지원 17.2만 원) 지급 - 저축 만기 불입 시 전액 지급

주: 서울특별시는 ‘희망플러스통장’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대상자가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7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않고 기존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적립·지급하고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2016년 10월 ‘희망키움통장Ⅱ’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구의 소득 하한 기준(기준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는 가입 불가)을 폐지, 소득 상한 기준을 완화(가입기간 중 소득 상한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중위소득 70%’로 변경)하였고, 2017년 2월에는 중도 탈락 요건(본인 적립금의 연속 미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과 사용용도의 증빙요건(정부지원금의 50%만 증빙)도 완화하는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7년 희망·내일 키움통장사업의 신규 모집 가구 수도 2016년의 신규 지원 가구 수(2만 6천 가구)보다 5천 가구가 늘어난 총 3만 1천 가구⁶⁹⁾로 산정·계획하였다.

또한 경기도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년 3월부터 소득 인정액의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변경하는 등 2016년의 신규 가입자 수 총 1,500명⁷⁰⁾의 6배에 달하는 총 9,000명까지 2017년에 확대·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69) 희망키움통장Ⅰ 3천 가구, 희망키움통장Ⅱ 25천 가구, 내일키움통장Ⅰ 3천 가구를 모집할 계획임

70) 2016년 시범 운영 시 500명 모집에 3,019명이 몰려 경쟁률 6.6대 1을, 같은 해 10월 추가모집 시 5,377명이 몰려 경쟁률 5.4대 1을 기록하였음.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6년 희망플러스통장은 200명 모집에 322명이 몰려 경쟁률 1.61:1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1,000명 모집에 2,130명이 몰려 경쟁률 2.13:1을 기록하였음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에 따르면 자산형성지원의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와 그 가구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자산형성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2017년 자활사업안내(Ⅱ)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희망플러스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와 그 가구원 전체는 보건복지부의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도록⁷¹⁾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시·군·구가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의 신규 가입자를 선정할 때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와 그 가구원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른 혜택이 수혜 자격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희망키움통장 I·Ⅱ’와 ‘내일키움통장’ 등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가입자 정보만 제공되고 있었을 뿐 서울특별시의 ‘희망플러스 통장’ 및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가입자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되지 않고 있어 시·군·구가 보건복지부의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신규 가입자를 선정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가입자 명단과 일일이 대조하여 확인하거나 가구원 전체가 아닌 가입 신청자 본인에 한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중복 수혜 사례를 걸러내지 못하고 누락할 소지가 있었다.

71)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에는 재가입이 불가함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8.~4. 18.) 중 보건복지부의 희망·내일키움 통장사업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중복으로 가입하여 근로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자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전산 추출하여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추출기준 】

- ▶ 추출대상: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에 중복 가입하여 근로장려금을 적립받고 있거나 이미 지급받아 해지한 자(2017년 3월 기준)
- ▶ 추출방법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로부터 자산형성사업에 가입하여 근로장려금을 적립받고 있거나 이미 지급받아 해지한 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음(2017년 3월 기준)
 - 제출받은 명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의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지급 해지자와 그가구원 유무 확인

점검 결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는 R의 경우 2015. 7. 17. 서울특별시 ‘희망플러스 통장’을 통해 7,200,000원을 만기 지급받은 이후 2015. 8. 17.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I’에 재차 가입하여 2017년 3월까지 7,993,000원의 지원금이 적립되고 있는 등 [별표] “보건복지부의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자산형성지원사업 간 중복가입 현황”과 같이 R 등 11명에게 보건복지부가 계 20,432,000원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계 44,675,000원을 중복으로 지급하였거나 계좌로 적립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혜택이 수혜자격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특정인 또는 특정 가구에 중복 지원되고 있는 등 보건복지부 지침 및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유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의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시·군·구에서 희망키움통장 I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신규 가입자를 선정할 때 가입 신청자 본인과 그 가구원이 다른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중복 참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관련 기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보건복지부의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자산형성지원사업 간 중복가입 현황

(단위: 원)

연번	성명	보건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명	지급액	진행상태 (신청일자) ¹⁾	사업명	지급액	진행상태 (신청일자)
1	R	희망키움통장 I	7,993,000	적립 중 (2015. 8. 17.)	서울특별시 희망플러스 통장	7,200,000	만기 지급 (2015. 7. 17.)
2	S	희망키움통장 I	1,845,000	탈수급 해지 (2015. 3. 2.)	서울특별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975,000	적립 중 (2015. 12. 18.)
3	T	희망키움통장 I	2,430,000	적립 중 (2016. 6. 10.)	서울특별시 희망플러스 통장	3,400,000	만기 지급 (2017. 2. 27.)
4	U	희망키움통장 I	364,000	적립 중 (2017. 3. 10.)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1,100,000	적립 중 (2016. 3. 24.)
5	V	희망키움통장 II	200,000	적립 중 (2016. 9. 9.)	서울특별시 희망플러스 통장	2,600,000	적립 중 (2014. 10. 17.)
6	W	희망키움통장 II	1,900,000	적립 중 (2015. 8. 7.)	서울특별시 희망플러스 통장	7,200,000	만기 지급 (2015. 4. 15.)
7	X	희망키움통장 II	1,100,000	적립 중 (2016. 3. 10.)	서울특별시 희망플러스 통장	7,200,000	만기 지급 (2015. 4. 15.)
8	Y	희망키움통장 II	1,900,000	적립 중 (2015. 8. 11.)	서울특별시 희망플러스 통장	7,200,000	만기 지급 (2015. 8. 17.)
9	Z	희망키움통장 II	1,100,000	적립 중 (2016. 3. 10.)	서울특별시 희망플러스 통장	2,400,000	중도해지 (2016. 1. 29.)
10	AA	희망키움통장 II	500,000	적립 중 (2016. 9. 9.)	서울특별시 희망플러스 통장	1,800,000	만기 지급 (2016. 5. 4.)
11	AB	희망키움통장 II	1,100,000	적립 중 (2016. 3. 10.)	서울특별시 희망플러스 통장	3,600,000	적립 중 (2013. 4. 12.)
계			20,432,000			44,675,000	

- 주: 1. 적립 중인 대상자의 경우 최초 사업에 신청한 일자를 기재하였으며, 탈수급 해지 또는 만기 지급완료, 중도해지자의 경우 탈수급 또는 만기 지급, 중도해지 일자를 기재하였음
2. 중도해지는 본인의 의사, 총 7회 이상 미저축, 제출서류 허위 발생, 의무 금융교육 무단 불참, 타시·도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만기 이전에 근로장려금을 제외한 본인의 저축액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는 것임
3. 근로장려금 등 정부지원금의 지급기간은 가입일이 속한 달부터 2017년 3월까지를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시정완료)

제 목 행복e음 실습용 교육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회보장정보원

조 치 기 관 사회보장정보원

내 용

1. 업무개요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이라 한다)⁷²⁾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행복e음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스템을 [표 1]과 같이 구축(사업기간: 2012년 3~5월, 사업금액: 107,602천 원)⁷³⁾하고 이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매년 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72)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73) 행복e음 실습용 교육시스템 구축 시 DB서버 등 하드웨어 증설과 소프트웨어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2012. 5. 16. 부터 9. 13. 까지 수행한 “운영시스템고도화 및 정보기반 자원증설 사업”에 포함하여 구매(107,602천 원)하였으며, 어플리케이션은 행복e음 운영서버와 동일한 소스 코드(source code)를 사용하고 DB 데이터는 특정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를 복제하여 구축하는 방법으로 추진

[표 1] 행복e음 교육시스템 구축내역

(단위: 천 원)

구분	구축연월	도입금액 (부가세 포함)	구축내용
계	2012년 3~5월	107,602	
하드웨어		17,820	-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개발서버(4대)를 재활용하여 교육시스템 전용 웹서버(1대)와 DB서버(1대)를 구축 - 운영·백업용 스토리지와 디스크 등 자원 증설
애플리케이션		자체추진	- 행복e음과 동일한 실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행복e음 운영 서버에 탑재된 소스코드(source code)를 복제
솔루션		71,632	-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DBMS, 리포팅툴, 웹서비스/WAS, X-internet 등 필수 소프트웨어를 도입
보안장비		18,150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자동 식별하여 마스킹 [예: 별표(*) 처리 등]하기 위한 보안장비를 도입
데이터		자체추진	- 행복e음테스트DB서버에서 사용 중인 특정 기초자치단체의실 개인정보 데이터(약 500GB)를 DB서버에 복제

자료: 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정보원은 2012년 3월 수립한 “행복e음 교육전용서버 구축(안)”에 따라 행복e음 개발용 DB서버⁷⁴⁾의 실 개인정보 데이터(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등 294만여 명의 개인정보)⁷⁵⁾를 복제하여 교육시스템 DB서버 데이터로 사용하고 DB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마스킹[별표(*)] 처리하여 화면에 출력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필터링 시스템(이하 “필터링시스템”이라 한다)⁷⁶⁾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정보원은 필터링시스템 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필터링시스템을 운용할 수 없을 때에는 행복e음 전산실습 교육 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거나 혹은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했다.

74) 행복e음의 기능 추가 및 개선, 오류 수정 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용도로 사용되는 DB서버

75) 기초생활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급자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하여 행복e음 개발용도의 DB서버에 저장·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인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개인정보를 교육용 데이터로 활용

76)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별표(*) 처리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는 시스템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정보원은 2012년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당시 도입한 필터링시스템에서 데이터 갱신과 수정 데이터의 연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사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필터링시스템을 운용하지 않고 DB에 저장된 294만여 명의 개인정보 중 103만여 명의 일부 개인정보만 비식별 처리⁷⁷⁾된 상태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그 이후에도 나머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나 소득·재산·가족 등 개인정보가 교육생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는데도 예산 및 시간적 제한 등의 이유로 필터링시스템의 보완 또는 개선조치 없이 교육시스템을 운영해왔다.

그 결과 교육시스템이 구축된 2012년 5월 이후부터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는 2017.

3. 8. 까지 [표 2]와 같이 정보원의 전산교육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1만 7천여 명에 대한 교육 시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가족들 294만여 명 중 191만여 명⁷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 재산 등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되지 않은 채 활용되었다.

[표 2] 행복e음 교육 횟수 및 이수자 현황

(단위: 회,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횟수	이수자 수	횟수	이수자 수	횟수	이수자 수	횟수	이수자 수	횟수	이수자 수
소집교육 ¹⁾	16	3,597	65	2,090	35	803	50	1,431	166	7,921
방문교육 ²⁾	35	841	95	2,449	52	1,352	129	5,022	311	9,664
계	51	4,438	160	4,539	87	2,155	179	6,453	477	17,585

주: 1. 정보원에 마련된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하는 교육
2. 시·군·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자료: 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77)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의 특정 자릿수를 별표 처리하는 방법

78) 교육시스템 DB서버에 저장된 수급자 등 약 294만여 명의 개인정보 중 약 103만여 명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의 특정 자릿수를 별표(*) 처리하여 DB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비식별 처리

관계기관 의견 정보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행복e음 실습용 교육시스템을 통해 노출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DB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다른 문자 혹은 별표(*)로 치환하는 방법 등으로 비식별 처리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화면 테스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속히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안전성 확보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등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은 2017. 3. 31. 실습용 교육시스템 DB에 저장된 개인정보 데이터를 치환하는 방법 등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각 기능에 대한 비식별 여부를 점검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사회보장정보원장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통보(시정완료)]

② **사회보장정보원장**은 향후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보육교사 임면사항 등 관리·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무상보육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의 자격정지·취소 등 자격관리를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2조의 규정과 「보육사업안내」 Ⅱ. 11.에 따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보험 가입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취소 및 육아휴직 기간 중 임면관리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격정지 중이거나 또는 자격취소 후 자격재교부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육교직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휴직포함)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 등에 보고하고,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시·군·구 등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의 자격정지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시·군·구가 관내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등 결격사유 및 육아 휴직 여부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는 한편, 자격정지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시·군·구에서 지도·점검시에 보육교직원의 보조금 유용 등 비위행위를 적발한 이후 해당 보육교직원의 자격정지나 취소처분을 확정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전에 다른 어린이집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시·군·구에서 자격정지나 취소처분 중인 보육교직원이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8. ~ 4. 18.)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1,668명의 보육교사⁷⁹⁾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재취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별표 1] “자격정지·취소 중 재취업한 보육교직원 현황” 같이

79) 보육교사를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전임규정이 없고 근무형태의 특수성으로 4대보험 가입 예외가 많아 제한된 감사기간 중 확인이 곤란하여 보육교사를 대상으로만 조사를 실시함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자격이 취소된 AC 등 3명과 자격이 정지된 AD 등 11명 계 14명이 자격 정지·취소된 기간 중 최소 1개월부터 최대 1년 8개월 동안 14개 어린이 집에 근무하며 29,738,600원의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면서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8. ~ 4. 18.) 중 육아휴직자의 어린이집 근무여부를 점검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별표 2] “육아휴직기간 중 보조금 수령자명단”과 같이 9명이 육아휴직을 하면서도 어린이집에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 인건비 등 12,661,546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보육교사의 4대보험 미가입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 규정과 「보육사업안내」 II. 11.에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보육교직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이 이를 위반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호 및 제4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우선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1년 이내의 운영정지·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정부는 국·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을 포함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4대보험 가입이 부진하자 감사원은 2013년 “보육료 등 집행관리실태” 감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보육교사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대표자 등이 보육교사의 4대보험 가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하거나 영업 정지 처분을 하는 등 실효성 있게 관리·감독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시·군·구에 4대보험 가입여부를 점검 하도록 통보만 하였을 뿐 점검결과를 제출받거나 미이행 어린이집에 대해 사후관리가 되는지 또는 행정처분을 하는지 등을 확인한 바 없고, 시·군·구에서 매년 8% 내외의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면서 확인하는 것 외에는 전체적인 보육교직원의 4대보험 가입실태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8. ~ 4. 18.) 중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 까지 총 4만 5천여 개의 어린이집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보육교사 37만여 명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5,596개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5,964명의 보육교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5,042개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5,335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4대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한 1,930개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소속 1,920명의 보육교사(중복 포함)들도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표] 보육교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 현황

(단위 : 개, 건, 명)

보험종류	어린이집 수	미가입 건수(인원)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등		민간개인·가정 등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수(건수, 인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수 (건수 / 인원)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수 (건수 / 인원)	
고용보험	5,596	6,145 (5,964)	1,037 (1,166 / 1003)	223 (275 / 363)	4,336 (4,704 / 4,598)
산재보험	5,042	5,486 (5,335)	893 (958 / 917)	183 (269 / 246)	3,966 (4,259 / 4,172)
계	10,638	11,631 (11,299)	1,930 (2,124 / 1,920)	406 (544 / 609)	8,302 (8,963 / 8,770)

주: 보육교사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2곳 이상의 어린이집에 재직한 경우가 있어 건수와 인원이 다름
자료: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4. 어린이집 원장의 사회복지시설 겸직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으로서 다른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고,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위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보육교직원 임면자료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의 종사자 인적사항 자료를 주기적으로 대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이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겸임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8. ~ 4. 18.) 중 어린이집 원장의 사회복지시설 겸임 여부를 점검한 결과, [별표 3]”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상 근무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 명단”과 같이 2014년 10월부터 2017년 4월 현재까지 ○○어린이집 원장 AE가 같은 기간동안 □□노인센터에 겸직하는 등 어린이집 원장 총 19명이 겸임이 금지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1.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취소 및 육아휴직 기간 중 임면관리 소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자격정지·취소기간 중 취업한 것으로 확인된 14명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자격취소·고발·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겠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9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과징금 처분, 원장의 자격정지 및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보육교사의 4대보험 미가입 관련

보건복지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보육교직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지도·감독 하도록 공문을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지침에 반영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 보육교직원 명단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미이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할 수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등에는 4대보험료 가입을 위한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가 4대보험에 빠짐 없이 가입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예산의 집행실태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어린이집 원장의 사회복지시설 겸직 관련

보건복지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연계의 효율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연계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겸직 의심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겸직근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전임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 ① 시·군·구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취소 등 결격사유 및 육아휴직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 ② 보육교사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호 및 제4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방안을 마련하며
- ③ 어린이집 원장의 사회복지시설 겸임 여부를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등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겸직한 ○○ 어린이집 원장 AE 등 19명에 대해서는 전임규정을 준수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 ④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 감사시 확인된 자격정지·취소기간 중 근무한 AF 등 14명과 육아휴직기간 중 어린이집에 근무한 AG 등 보육교사 9명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보조금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자격정지·취소 중 재취업한 보육교직원 현황

(단위: 원)

연번	이름	제재종류	자격정지·취소 사유	자격정지·취소 후 근무기간	자격정지·취소 기간 중 근무한 어린이집	보조금 수령내역
1	AF	자격정지	보조금 부정수급	6개월	□□ 어린이집	2,460,000
2	AC	자격취소	보조금 부정수급	1년 8개월	△△ 어린이집	-
3	AD	자격정지	보조금 부정수급	1개월 15일	▷▷ 어린이집	8,459,260
4	AH	자격정지	운영비 유용	1년	▽▽ 어린이집	-
5	AI	자격정지	보조금 부정수급	1개월	◁◁ 어린이집	1,327,760
6	AJ	자격정지	보조금 부정수급	6개월	◇◇ 어린이집	-
7	AK	자격취소	보조금 부정수급	4개월	♡♡ 어린이집	-
8	AL	자격정지	보조금 부정수급	1개월 20일	♠♠ 어린이집	1,575,000
9	AM	자격정지	운영비 유용	3개월	♣♣ 어린이집	-
10	AN	자격정지	보조금 부정수급	3개월	☆☆ 어린이집	3,492,610
11	AO	자격취소	보조금 부정수급	3개월 10일	●● 어린이집	2,260,000
12	AP	자격정지	보조금 부정수급	1개월 15일	■ ■ 어린이집	-
13	AQ	자격정지	보조금 부정수급	2개월	▲▲ 어린이집	9,443,970
14	AR	자격정지	보조금 부정수급	1개월	▶▶ 어린이집	720,000
	계					29,738,600

주: 보조금 수령내역이 없는 사람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보조금 승인내역이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육아휴직 기간 중 보조금 수령자 명단

연번	성명	어린이집명	직위	육아휴직 시작일	육아휴직 종료일	지원 보조금
1	AG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조교사	2014. 10. 30.	2015. 10. 29.	누리과정 보조교사 지원금 5,960,000원
2	AS	◀◀어린이집	담임교사	2016. 4. 19.	2017. 2. 28.	인건비 지원금 711,216원
3	AT	◆◆어린이집	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	2016. 5. 16.	2016. 11. 15.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장기근속수당, 시간연장 월급여 등 총 1,495,730원
4	AU	♠♠어린이집	조리사	2015. 3. 16.	2015. 4. 15.	처우개선비 100,000원
5	AV	♣♣어린이집	담임교사	2015. 12. 10.	2016. 2. 29.	처우개선비 추가분 30,000원
6	AW	♥♥어린이집	담임교사	2015. 7. 12.	2015. 10. 11.	처우개선비 추가분, 근속수당, 복리 후생비 등 360,000원
7	AX	★★어린이집	담임교사	2013. 5. 2.	2014. 4. 30.	연구활동비 50,000원
8	AY	◎◎어린이집	담임교사	2016. 4. 5.	2016. 6. 4.	근무환경 개선비 26,600원 처우개선비 8,000원
9	AZ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조교사	2015. 8. 9.	2016. 8. 7.	누리과정 보조교사 지원금 3,920,000원
	계					12,661,546 원

주: AY과 AZ은 실제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주장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상 근무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 명단

연번	성명	어린이집명	임용일	면직일	시설명	입사일	퇴사일
1	AE	○○어린이집	2014. 10. 1.		□□노인센터	2014. 10. 1.	
2	BA	◆◆어린이집	2016. 11. 8.		○○요양원	2017. 3. 21.	
					○○요양원	2015. 3. 18.	2017. 1. 20.
3	BB	●●놀이방	2007. 10. 24.		●●요양원	2016. 10. 3.	2016. 11. 30.
					○□요양원	2015. 12. 1.	2016. 2. 5.
					○△	2012. 12. 27.	2013. 3. 26.
					○▷요양원	2012. 3. 13.	2012. 3. 31.
					○▽	2011. 12. 11.	2011. 12. 23.
4	BC	□☞어린이집	2014. 12. 31.	2015. 7. 31.	○◁아동센터	2013. 12. 26.	
5	BD	□☆어린이집	2016. 9. 21.		○◇아동센터	2015. 12. 1.	
6	BE	□●어린이집	2015. 1. 6.	2015. 9. 18.	○♡	2015. 8. 1.	2015. 9. 22.
7	BF	□■어린이집	2015. 11. 1.	2016. 7. 12.	○♣요양원	2016. 4. 2.	2016. 8. 1.
					○☞요양원	2016. 3. 3.	
8	BG	□▲어린이집	2004. 7. 1.		○☆	2016. 12. 8.	
9	BH	□▶어린이집	2015. 3. 1.	2016. 5. 30.	○●요양원	2015. 9. 1.	2015. 9. 8.
10	BI	□▼어린이집	2008. 8. 6.	2015. 7. 31.	○■	2015. 4. 1.	2016. 3. 9.
11	BJ	□◀어린이집	2013. 3. 6.		○▲	2016. 4. 4.	2016. 12. 12.
					○▶요양원	2015. 7. 1.	2015. 7. 28.
					○▼복지원	2014. 3. 20.	2014. 6. 18.
					○◀요양센터	2013. 12. 18.	2014. 2. 28.
					○◆요양원	2013. 8. 1.	

연번	성명	어린이집명	임용일	면직일	시설명	입사일	퇴사일
12	BK	□◆어린이집	2015. 12. 1.	2016. 6. 6.	○♠요양원	2016. 3. 21.	2016. 7. 24.
13	BL	□♠어린이집	2013. 10. 23.		○♣요양원	2016. 9. 1.	
					○♥	2016. 7. 1.	2016. 8. 31.
					○★	2015. 4. 4.	2016. 4. 6.
14	BM	□♣어린이집	2012. 3. 2.	2016. 8. 23.	○◎요양원	2016. 6. 8.	2016. 6. 13.
					○◎요양원	2015. 9. 1.	2016. 2. 29.
					○■	2014. 10. 8.	2014. 10. 21.
					○◆	2014. 8. 11.	2014. 9. 17.
					○○요양원	2014. 5. 12.	2014. 7. 6.
					○●요양원	2013. 7. 9.	2013. 8. 26.
15	BN	□♥어린이집	2015. 8. 1.	2015. 11. 30.	○●요양원	2015. 10. 12	2015. 11. 13.
					□△	2015. 8. 1.	2015. 9. 29.
16	BO	□★어린이집	2010. 5. 4.	2015. 12. 15.	□▷	2015. 10. 9.	2015. 11. 2.
17	BP	□◎어린이집	2008. 3. 27.	2016. 3. 1.	□▽보호센터	2015. 5. 19.	2016. 7. 31.
18	BQ	□■어린이집	2012. 9. 21.	2015. 2. 10.	□◁	2015. 1. 8.	2015. 2. 7.
					□◇	2014. 10. 19.	2015. 1. 1.
					□♡요양센터	2014. 7. 1.	2014. 7. 31.
19	BR	□◆어린이집	2014. 1. 1.		□♠복지센터	2015. 3. 30.	2015. 11. 2.

주: 면직일이 공란인 경우 현재까지 근무중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선정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국토교통부

조 치 기 관 국토교통부

내 용

1. 업무 개요

국토교통부는 2014. 1. 24. 제정⁸⁰⁾된 「주거급여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주거급여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은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를 수선유지급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보장기관인 시·군·구가 LH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연간 수선계획의 수립, 수선의 실시 등을 LH공사에 의뢰하도록 하며, 같은 법률 제18조에 따라 시·군·구 등의 수선유지급여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및 「주거급여법」 제8조 등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⁸¹⁾의 43% 이하(2015년 기준: 4인 가구 182만 원/월)인 수급권자 중

80) 「주거급여법」은 2014. 1. 24. 제정되었으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지연 등의 사유로 주거급여는 개별 급여로 분리 독립하여 2015. 7. 1. 부터 시행함

81)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춤형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는 것으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산정된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自家) 가구⁸²⁾에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수선유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8호) 제4조와 매년 고시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국토교통부)에서는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 노후도⁸³⁾를 고려하여 경보수(3년 주기로 350만 원), 중보수(5년 주기로 650만 원), 대보수(7년 주기로 950만 원) 등 보수범위⁸⁴⁾별로 수선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7월 주거급여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규정에 따라 기존에 수선을 받은 주택은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이라는 사유로 2015년 시행 첫 해에는 경보수에 대해 3년 내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급여 및 다른 부처의 주택개량 사업⁸⁵⁾에서 지원을 받은 가구를 수선유지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가(自家)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14. 10. 29.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재를 받고 같은 날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⁸⁶⁾에서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을 받았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최근 3년간 주택개량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를 2015년 하반기 경보수 수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82) 자가가구의 범위는 ①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타인 주택 전체를 무료 임차한 자 포함), ③ 미등기 주택 소유 거주자, ④ 무허가 주택 소유 거주자(기존 무허가 관리 대장에 등재된 경우), ⑤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자(농촌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으나 관례적으로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경우 자가로 인정)

83) 주택 노후도는 보수범위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자가 보유한 주택의 전용 부분에 한하여 구조 안전(3개), 설비 상태(12개), 마감 상태(4개) 등 19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2015년 기준)

84) 보수범위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6점 이하), 중보수(36점 초과~68점 이하), 대보수(68점 초과)로 구분하는데 경보수는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마감재 개선,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대보수는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공사 등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을 위한 공사 실시

85)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환경부의 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량 사업,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집수리 사업) 등

86)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위원회로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2015. 1. 22. 보건복지부에 “2013년 및 2014년 시·도별 주거현물급여 수혜가구 현황” 자료를 취합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5. 3. 10. 이를 전달받았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위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및 주거급여 사업의 선정기준·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리하여 LH공사 및 시·군·구 업무담당자들에게 배포한 ‘주거급여 사업안내’ 책자 등 법령상 또는 공식적인 업무처리 기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 받은 2013년 및 2014년 수혜가구 현황자료를 수선유지계획(대상자 선정포함)을 수립하는 LH공사에 전달하여 2015년 하반기 경보수 수선유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LH공사 및 시·군·구의 수선유지 급여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내용을 2015. 5. 29. 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및 2015. 5. 29. LH공사와 시·군·구에 배포한 “2015년도 주거급여 사업 안내” 매뉴얼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 3. 10. “2013년 및 2014년 시·도별 주거현물급여 수혜가구 현황” 자료를 제공받고서도, 2015년 하반기 경보수 수선유지 대상을 선정하는 LH공사에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2015. 6. 11. LH공사로부터 2015년 하반기 경보수 수선유지 대상자 명단 등을 제출받고서도, 위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2013년도 및 2014년도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급여 수급자가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수선유지급여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8.~4. 18.) 중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주거급여가 시행된 첫해인 2015년 하반기 경보수 수선유지 대상자 선정 시 2013년

및 2014년 주거현물 급여 대상자의 제외여부를 점검한 결과, [별표] “2015년 하반기 시·도별 수선유지급여 부적정 지급내역”과 같이 2015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선유지비를 지급받은 전체 수혜자 9,787가구 중 1,478가구(178개 시·군·구)가 최근 2년(2013~2015년 상반기)⁸⁷⁾ 내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 급여를 1회 내지 2회 이상 지급받았는 등 합계 4,190백만여 원의 수선유지 급여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집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87)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 의결내용은 최근 3년간 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가구로 명시하고 있지만 개편된 수선유지급여에서 경보수 수선은 3년 주기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적용할 때는 수선유지급여를 실시하는 당해 연도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수혜여부만 확인(2015년 하반기: 2013~2015년 상반기)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국토교통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시·군·구 및 LH공사가 수선유지급여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 등 지원기준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구 및 LH공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실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2014. 12. 5. 및 2015. 3. 24. 2차례에 걸쳐 LH공사 및 시·군·구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위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육자료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LH공사가 과거 수혜가구 현황자료를 직접 시·군·구에 요청하여 중복 수혜자를 선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과거 수혜이력을 LH공사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차례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유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와 현장 주거급여 업무처리 담당자의 참고자료인 「주거급여 사업 안내」 매뉴얼에 위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사항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시달하지 않은 것은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2015년 하반기 경보수 수선유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 및 2014년 수혜이력 자료를 일괄 제공받고도, LH공사가 직접 시·군·구로부터 과거 수혜이력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LH공사에 과거 수혜현황 자료를 시·군·구에 직접 요청하여 제공받도록 지시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LH공사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앞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사항 등 방침으로 정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반하여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등에 선정기준을 명확히 반영하여 시달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시·군·구의 주거급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2015년 하반기 시·도별 수선유지급여 부적정 지급내역

(단위: 가구, 원)

시·도	구분	2015년 하반기			계 (A+B+C)
		2015년 하반기 vs 2013년 (A)	2015년 하반기 vs 2014년 (B)	2015년 하반기 vs 2015년 상반기 (C)	
계	가구	711	753	14	1,478
	금액	2,020,006,682	2,128,044,564	42,905,289	4,190,956,535
서울특별시	가구	10	12	0	22
	금액	30,164,245	34,819,826	0	64,984,071
부산광역시	가구	70	79	3	152
	금액	202,190,000	224,769,000	7,420,000	434,379,000
대구광역시	가구	10	17	0	27
	금액	23,546,424	41,202,597	0	64,749,021
인천광역시	가구	63	62	2	127
	금액	174,076,271	162,985,177	4,665,289	341,726,737
광주광역시	가구	27	27	0	54
	금액	67,218,108	64,403,062	0	131,621,170
대전광역시	가구	15	13	0	28
	금액	49,320,000	41,088,000	0	90,408,000
울산광역시	가구	6	3	0	9
	금액	16,470,000	9,700,000	0	26,170,000
세종특별자치시	가구	4	6	0	10
	금액	9,977,000	17,996,000	0	27,973,000
경기도	가구	52	62	0	114
	금액	156,135,306	182,796,140	0	338,931,446
강원도	가구	53	32	0	85
	금액	134,707,000	88,551,000	0	223,258,000
충청북도	가구	41	32	7	80
	금액	135,887,000	104,300,000	24,233,000	264,420,000
충청남도	가구	42	32	0	74
	금액	143,318,226	108,584,505	0	251,902,731
전라북도	가구	98	103	0	201
	금액	254,022,187	278,600,739	0	532,622,926

시·도	구분	2015년 하반기			
		2015년 하반기 vs 2013년 (A)	2015년 하반기 vs 2014년 (B)	2015년 하반기 vs 2015년 상반기 (C)	계 (A+B+C)
전라남도	가구	113	143	0	256
	금액	308,845,622	391,422,165	0	700,267,787
경상북도	가구	51	68	0	119
	금액	137,570,677	179,090,968	0	316,661,645
경상남도	가구	52	60	1	113
	금액	162,985,616	191,466,385	3,185,000	357,637,001
제주특별자치도	가구	4	2	1	7
	금액	13,573,000	6,269,000	3,402,000	23,244,000

- 주: 1.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한 연도를 기준으로 수혜 가구가 최근 2년 내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급여 혹은 국토교통부의 수선유지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2. 수혜 가구와 금액은 수선유지급여가 중복 지급이 발생된 시점인 2015년 하반기 당해연도만 적용
3. 전체 수혜가구에서 긴급보수와 중·대보수로 지급된 가구는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재구성